



2023 산재보험 보상에서 치료·재활까지 알기 쉬운 보상·재활 서비스 가이드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단 1명의 근로자도 산재보상의
따뜻한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발간사

더 나은 미래와 일하는 삶의 희망을 지키는 튼튼한 ‘희망버팀목’으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일을 하시다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산재근로자와 가족 분들께 근로복지공단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은 산재근로자가 안정적이고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최상의 요양과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요양초기단계부터 개인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재 요양·보상 및 재활서비스 전반에 대한 안내를 담은 이 책자가 고객님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산재를 극복하고 원활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삶을 보호하는 진정한 희망버팀목으로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재근로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와 여러분과 가족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박종길



CONTENTS

Chapter

1

한눈에 보는 산재보험 보상·재활 가이드북 07

- 1. 산업재해란? 08
- 2. 산재보험 보상·재활 서비스 절차 12
- 3. 업무상 재해 판정 절차 13
- 4. 산재 장애 판정 절차 14
- 5.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 15

Chapter

2

산재보험 요양 절차 17

- 1. 재해가 발생했을 때 18
- 2. 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20
- 3.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 21
- 4.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때 22
- 5. 치료 중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었을 때 23
- 6.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판단이 필요할 때 24

Chapter

3

산재보험 급여 청구 27

- 1. 산재요양 승인 전 환자가 진료비 등을 부담한 경우 28
- 2.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32
- 3. 장기요양환자가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34
- 4. 치유 후 장애가 남은 경우 35
- 5.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39
- 6.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0
- 7. 사망근로자의 장례를 지낸 경우 41
- 8. 직장복귀 지원이 필요한 경우 42
- 9. 통장이 압류되어 보험급여를 받기 어려울 경우 43

Chapter

4

산재근로자 재활프로그램 45

- 1. 맞춤형 통합서비스 안내 46
- 2. 내일찾기(My job, Tomorrow)서비스 안내 49
- 3. 단계별 제공서비스 알아보기 50
- 4. 재활지원팀 및 소속기관 재활서비스 업무 안내 68

Chapter 5

산재보험 이의제기 절차 69

- 1. 심사(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70
- 2. 고객권익보호담당관(공인노무사)의 무료 상담서비스 운영 안내 72

Chapter 6

보험급여 지급 기준 참고자료 73

- 1. 보험급여 지급기준 74
- 2. 2023년 고시 모음 80

Chapter 7

알면 도움되는 Tip 83

- 1. 다양한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 84
- 2. 가정간호 방문서비스 제공 안내 85
- 3. 케어센터 입소 안내 86
- 4.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안내 87
- 5. 근로복지공단 산업보건사업 안내 88
- 6.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의료재활사업 안내 89
- 7.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사업 안내 91
- 8. 산재보험 재활인증 의료기관 안내 92
- 9. 산재보험 화상인증 의료기관 안내 99
- 10. 산재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이용 안내 100
- 11. 외부기관의 재해근로자 지원 사업 안내 103

Chapter 8

청렴한 세상, 함께 만들어 갑니다 107

- 1. 산재보상 부정수급 신고 안내 108
- 2.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안내 109
- 3.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110

부록 | 전국 지사 찾기 111

- 1. 근로복지공단 위치 안내 112
- 2. 근로복지공단 병원 위치 안내 117
- 3. 안전보건공단 위치 안내 118



단 1명의 근로자도 산재보상의
따뜻한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산재보험
보상·재활 서비스
가이드



Chapter 1

한눈에 보는 산재보험 보상·재활 가이드북

1. 산업재해란?	08
2. 산재보험 보상·재활 서비스 절차	12
3. 업무상 재해 판정 절차	13
4. 산재 장애 판정 절차	14
5.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	15

1 / 산업재해란?

☑️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누어 집니다.**

-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업무상 사고란?

-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이란?

-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3 출퇴근재해란?

-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수단 상관없이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하세요!



4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근로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확대시행 되었습니다.(’20. 6월 부칙개정에 따라 ’16. 9. 29.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소급적용)

5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공단홈페이지 ➡ 산재보상 ➡ 출퇴근재해란(<https://www.comwel.or.kr>)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② 학교,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⑦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

☑️ 출퇴근재해 부담없이 산재신청하세요! 모두에게 WIN-WIN

- 1** —————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어요!

 -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재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2** —————

근로자에게 자동차보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요!

 - 치료비 등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을 지급하고, 자동차 보험에는 없는 장해·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단홈페이지 ➡ 산재보상 ➡ 출퇴근재해란(<https://www.comwel.or.kr>)
 

☑ '23.7.1.부터 노무제공자(특고·플랫폼종사자)의 산재 보호가 확대됩니다

▶ 노무제공자

-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舊(구) 산재보험법상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하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하였습니다.

1 산재보험 보상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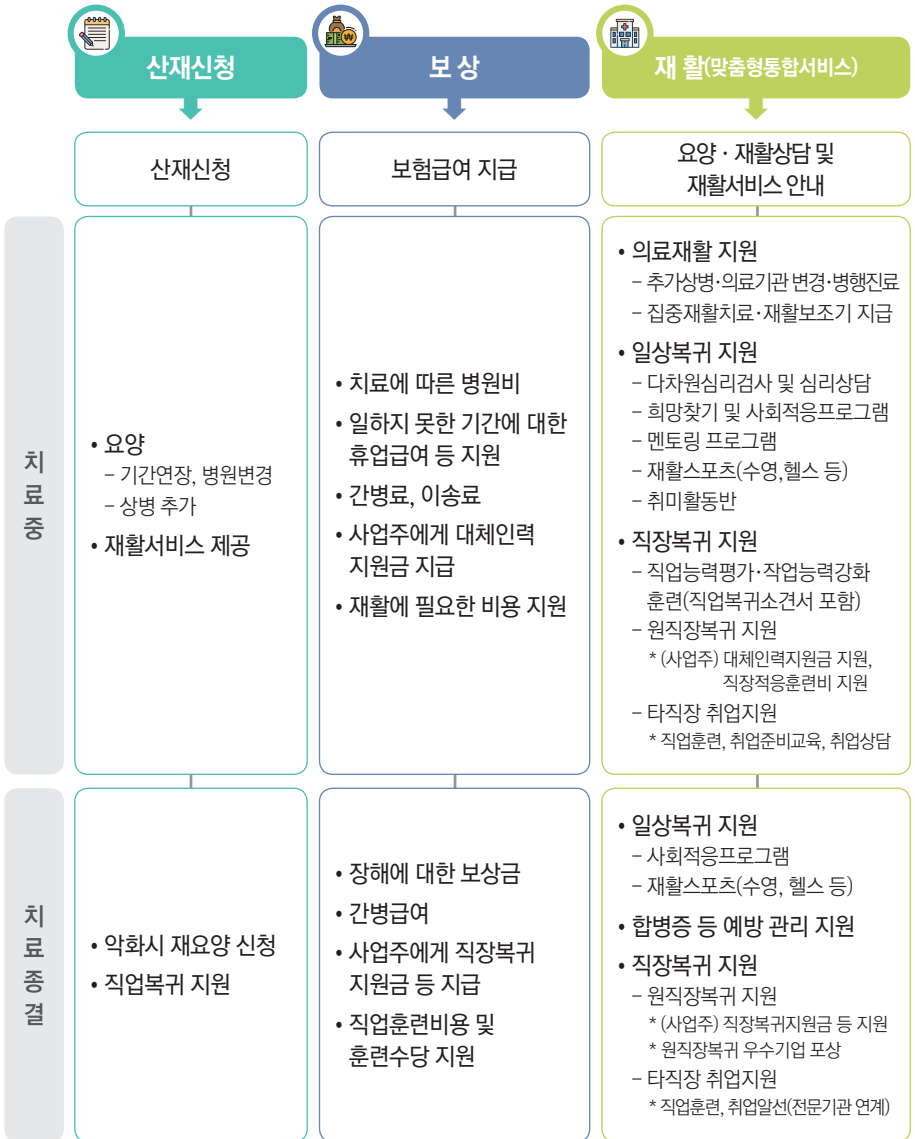
- 주로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도 일하다 다치는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①업무 수행중 사고, ②출퇴근 중 사고, ③업무상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 적용 대상

-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비전속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과 추가 적용확대 직종을 포함하여 총 18개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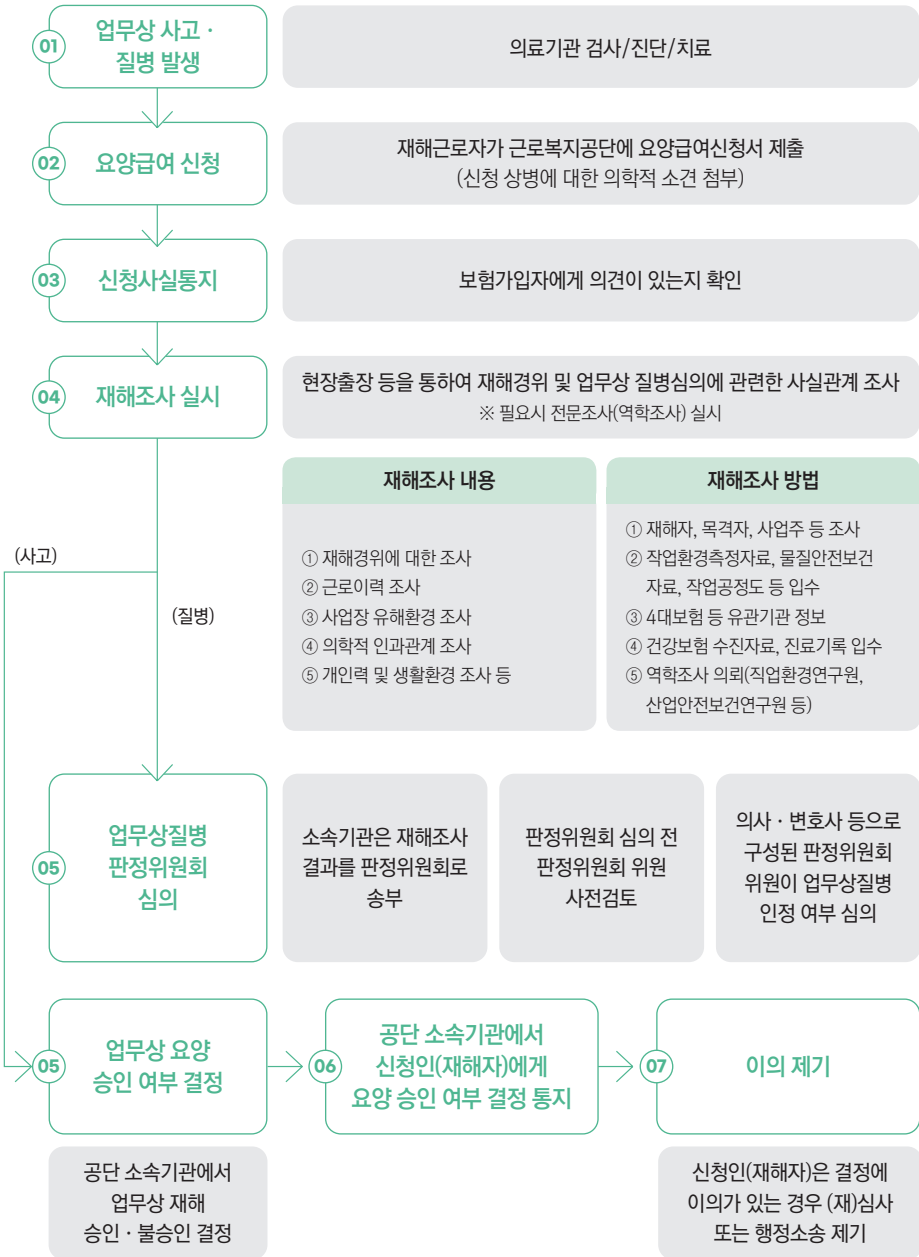
직종	적용확대 내용	직종	적용확대 내용
① 보험설계사	세마을금고, 신협 공제모집인(*24.1.1.시행), 교차모집인 보험설계사	⑩ (후원) 방문판매원	-
② 건설기계조종사	-	⑪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③ 방문강사	-	⑫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④ 골프장 캐디	-	⑬ 건설현장 화물차주 (살수차·고소작업차·카크크레인)	신규
⑤ 택배기사	-	⑭ 화물차주	모든 영업용 화물차주 (특정 품목/산업구분 폐지)
⑥ 퀵서비스기사	-	⑮ 소프트웨어기술자	-
⑦ 대출모집인	-	⑯ 방과후학교강사/ 유치원·어린이집강사	신규(*24.1.1.시행)
⑧ 신용카드모집인	제휴 모집인	⑰ 관광통역안내사	신규
⑨ 대리운전기사	모든 대리운전기사, 택송기사, 대리주차원	⑱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신규

2 / 산재보험 보상·재활 서비스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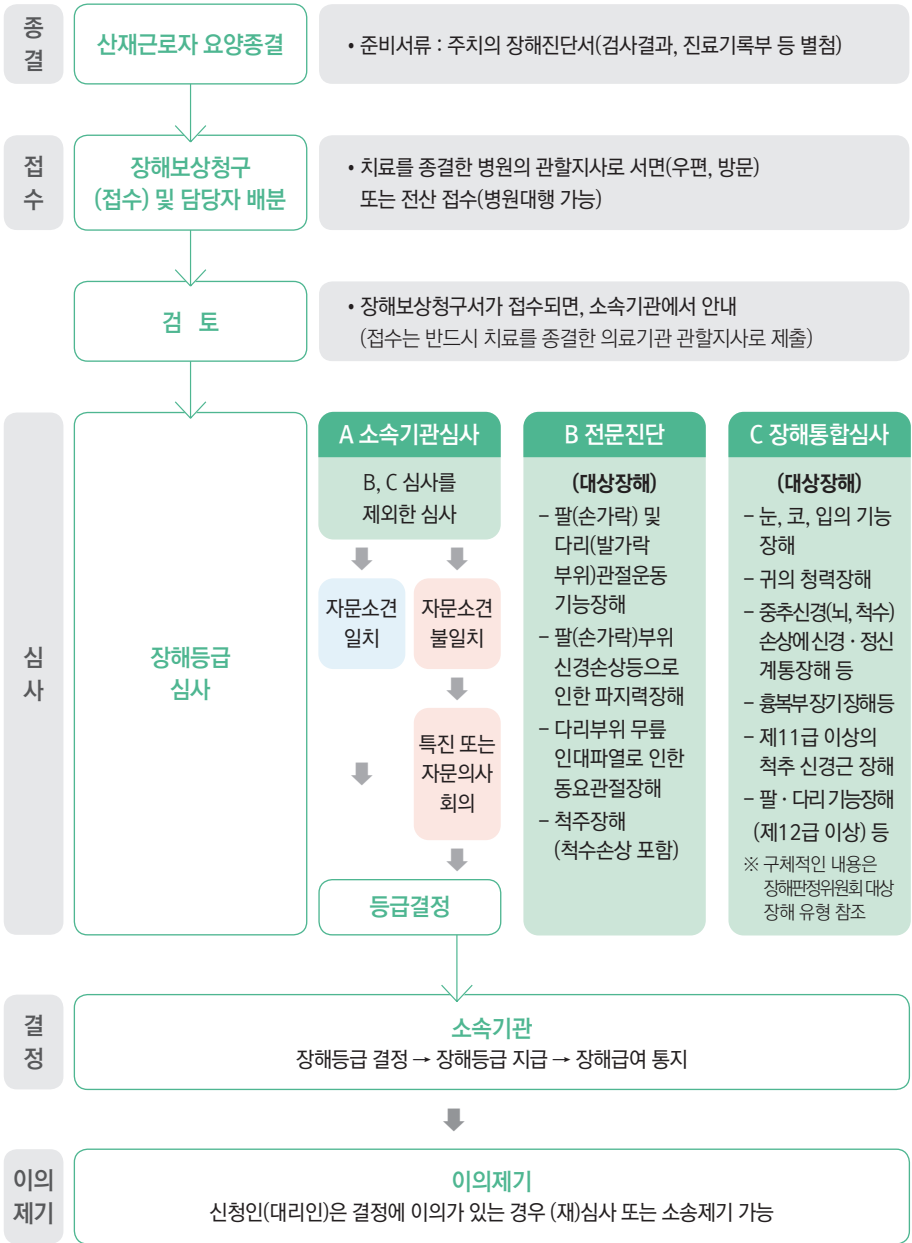


맞춤형통합서비스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요양초기부터 개인별 특성에 맞는 요양·보상·재활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에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고객맞춤형 통합서비스입니다.

3 업무상 재해 판정 절차



4 산재 장애 판정 절차



5 /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

<p>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 간병료 : 간병에 따른 비용 • 이송료 :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비용 • 기 타 :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p>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p>오랜 치료에 따른 상병보상연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p>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p>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p>직업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장해인(제1급~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제1급~12급)이 직업훈련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p>사망에 따른 유족급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p>장례를 위한 장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를 지낸 사람(유족 등)에게 지급



단 1명의 근로자도 산재보상의
따뜻한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산재보험
보상·재활 서비스
가이드



Chapter 2

산재보험 요양 절차

- | | |
|-------------------------------|----|
| 1. 재해가 발생했을 때 | 18 |
| 2. 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 20 |
| 3.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 | 21 |
| 4.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때 | 22 |
| 5. 치료 중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었을 때 | 23 |
| 6.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판단이 필요할 때 | 24 |



재해가 발생했을 때

: 요양급여 신청

신청서 작성방법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https://total.comwel.or.kr>) 또는 재해상담 전화 Call-Back서비스 (☎1588-0075)를 이용하시면 신속한 산재신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18. 1. 1.부터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신청인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사업주의 의견 확인 후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등 사고발생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 외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 및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접수 후 필요에 따라 공단 직원이 사업장 또는 재해근로자를 방문하여 재해경위를 확인하거나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 사실에 대하여 사업주의 의견이 다른 경우 사업주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 또한, 직업성 암 등 희귀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신청서 처리 결과는 신청인, 보험가입자 및 의료기관에 통보합니다.
 -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 제3자 등과 합의하였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요양기간에 지급될 보험급여(요양·휴업급여 등)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재해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유로 보험가입자 등으로부터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강손상자녀(태아) 산재보험 적용

1. 인정기준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2. 급여종류 : 요양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 ※ 18세 이후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장애급여 및 장례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장례비는 최저금액)으로 지급
3. 수급권 : 자녀*에게 수급권을 인정하되 장례비는 유족에게 지급
 - * 자녀에게 이 법을 적용할 때 재해 발생 당시 그 모(母)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봄
4. 적용대상 : 법 시행일('23.1.12.)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되
 - ① 법 시행일 이전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한 경우, ② 법원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③ 법 시행일 이전 3년 이내 출생했지만 증상발현이 늦어 시행일 이후 3년 이내 신청한 경우 소급 인정

2

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 진료계획서 제출

- ☑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의 치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의 상병 경과,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 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3개월 단위로 하여 종전의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상·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진폐증, 이황화탄소중독증, 중추 신경계통의 마비로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는 부상·질병, 직업성 암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진료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상병 경과,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 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지사 :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지사(지역본부)
- 진료계획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를 산재근로자와 의료기관에 통보합니다.
 - 보험가입자가 진료계획서 심사결과를 요청할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게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산재근로자의 계속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진찰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에 따라 공단은 치료기간 및 치료방법의 변경, 의료기관 변경 조치 등 진료계획 변경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산재근로자가 동시에 2개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에 병행진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

: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

- ☑️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 변경 요양은 공단이 산재근로자의 신청 사유 등을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므로 응급진료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신청을 하더라도 의료기관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변경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를 맞지 않는 경우 공단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의료기관 변경 요양신청서에 해당사유를 표시하고, 옮기고자 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명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지사**: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지사(지역본부)
- 산재근로자는 사전에 의료기관을 변경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산재지정 여부, 요양가능 여부 및 진료과목 등을 확인한 후 의료기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재활인증의료기관**: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인증받은 의료기관으로서, 일반 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로 인정되지 않거나 제공할 수 없는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 ① **특히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에서는 국내 최고의 재활시설을 갖추고 개인별 맞춤형 통합 재활치료를 제공합니다.**
- 의료기관 변경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사유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등을 거쳐 의료기관 변경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때

: 재요양 신청

- ☑️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료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다시 치료받기 위하여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와 재요양 신청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지사** : 마지막으로 요양했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지역본부)
- **재요양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치의사와 공단 자문의사가 의학적 소견을 달리할 경우 재요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특별진찰 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 제3자 등과 합의하였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재요양기간에 지급될 보험급여(요양·휴업 급여 등)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해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유로 보험가입자 등으로부터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재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상병상태와 재요양 요건 해당여부에 대해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예방관리 증상과 동일한 사유로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치료 중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었을 때

: 추가상병 신청

- ☑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게 당초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추가로 신청하는 것으로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하며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 상병에 대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추가상병신청서에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지사 :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지사(지역본부)
- !
 다만,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추가상병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장 관할지사(지역본부)에도 제출 가능합니다.
-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재해경위 및 최초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산재근로자 본인의 기존질환은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6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판단이 필요할 때

: 재활특별진찰

- ☑ 산재근로자의 신체기능 회복촉진을 위해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의료재활에 관한 긍정적 경험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 변경을 확산하고자 재활특진을 실시합니다

대상자

- 최초요양 승인 시 집중재활치료 대상자에게 SMS,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토털서비스로 재활특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집중재활치료 대상

- ①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인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 ②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의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 ③ 위 ①, ②질환 중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또는 6개월을 초과하였으나 적극적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최초요양(일부)승인

(초진소견서 기준)
재해일, 수술일, 상병코드, 집중재활치료 필요 구분을 기준으로 집중재활치료 대상자 중 재활특진 가능 대상자 선정



재활특진 안내

(재활특진 대상자) 휴대전화 SMS로 재활특진 안내
.....
(산재보험 의료기관) 토털서비스로 재활특진 안내문 발송



특진의료기관 선택

(선택확인서 제출)
특진대상자 또는 의료기관에서 '특진의료기관 선택 확인서' 대행 제출

- 집중재활치료 대상자 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주치의가 재활특진 의뢰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주치의가 재활특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특진의뢰 소견서' 제출



소속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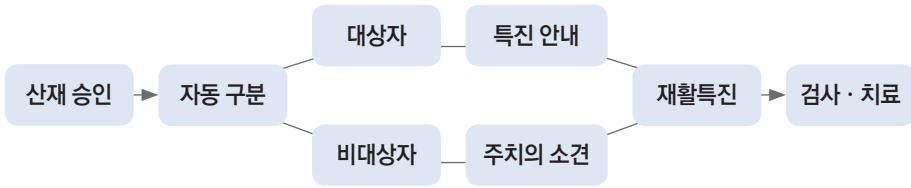
재활특진 필요성 여부 판단
.....
재활특진 필요한 경우 특진의료기관 2개소 제시



재활특진 대상자

특진의료기관 1개소 선택

재활특진 프로세스



* 대상자 구분 및 특진안내는 토털서비스, 노동보험시스템으로 프로그래밍



알아두세요!

- ① 재활특진은 전문적인 재활치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증상고정 여부 또는 통원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② 재활특진 결과 전문적인 재활치료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증상고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 1명의 근로자도 산재보상의
따뜻한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산재보험
보상·재활 서비스
가이드



Chapter

3

산재보험 급여 청구

1. 산재요양 승인 전 환자가 진료비 등을 부담한 경우	28
2.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32
3. 장기요양환자가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34
4. 치유 후 장애가 남은 경우	35
5.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39
6.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0
7. 사망근로자의 장례를 지낸 경우	41
8. 직장복귀 지원이 필요한 경우	42
9. 통장이 압류되어 보험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	43



산재요양 승인 전 환자가 진료비 등을 부담한 경우

: 요양비 청구

요양비(산재 승인전 치료비, 간병료, 이송료, MRI비용 등) 청구

「산재승인 전 건강보험 우선적용」이란?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이 산재 여부를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건강보험으로 우선 적용하여 치료 받은 후 산재승인이 난 경우 본인부담금, 이송료 등을 요양비 청구

- 일반적으로 산재 승인 후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요양하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지만, 산재 승인 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우선 적용하여 치료비를 부담하고 그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간병, 이송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득이하게 본인이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을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승인 전 여러 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토털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괄 온라인 청구 가능합니다.
 - 청구 시 이전 의료기관의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산재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산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모든 본인부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할 수 없는 비급여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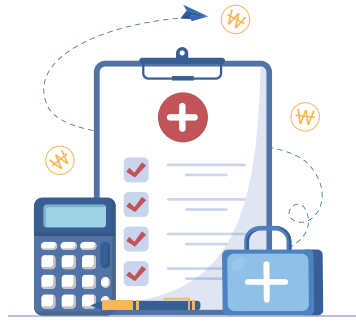
-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 ▶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급여로 정하지 않는 진료항목과 비용
 - ▶ 상급병실 사용료(다만, ①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인정 ②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 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나, 중환자실·격리실 등 집중 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인정)
- ※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상급병실 : 1인실, 특실 해당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란?

산재근로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산재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공단이 확인해 주는 제도

- 산재요양 승인 전·후 산재근로자가 부담한 치료비 중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되어 의료기관이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 의료기관이 산재근로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하여 부담하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 공단이 산재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본인부담 치료비(비급여) 중 요양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21.6.9.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인대상자

- 산재근로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른 수급권 대위가 인정되는 '보험가입자'

확인대상

- 의료기관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상 비급여 진료비용

※ 아래 항목은 확인대상에서 제외

-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과 관련된 진료비용이 아닌 경우
- 진료계획, 의료기관 변경 등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임의진료비용인 경우
- 화장품, 의약 외품 등 의료행위와 관련되지 아니한 비용
- 의지(義脂), 보조기, 간병,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
- 약국 약제비
- 소멸시효가 완성된 진료비용
- 그 밖에 이유로 확인 제외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요청 절차

-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첨부하여 제출

개별요양급여

-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급여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과 비용 중에서 산재근로자 진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요양급여로 심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개별요양급여제도에 대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에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 가능 합니다.
 - 공단홈페이지(www.comwel.or.kr) → 재활 → 의료서비스종합안내 → 개별요양급여제도
 - 개별요양급여로 신청한 개별 건에 대한 승인사례이므로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에 대한 Q&A?

Q. 공단에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확인 요청을 하면 비급여 전부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비급여) 중 요양급여임에도 의료기관이 과다하게 본인부담을 시킨 경우,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된 경우에만 환부를 받게 됩니다.
- 정당하게 부담시킨 비급여는 환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공단에 요청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확인 결과 의료기관에서 과다 청구한 금액이 확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 과다본인부담금(환불결정금액)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산재근로자에게 환부 결정금액을 직접 환부 조치하도록 공단에서 의료기관에게 통지합니다.

Q.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났는데도 의료기관에서 환부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만약,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산재근로자에게 과다본인부담금을 환부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께서 「과다본인부담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환부결정금액)을 공제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해 드립니다.
- 다만, 산재지정 의료기관 해지, 휴업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가 발생 되지 않을 경우 환부가 지연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이송료, 간병비 등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 확인 대상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상 비급여 진료비에 한합니다.
- 아래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확인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①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과 관련된 진료비용이 아닌 경우
 - ② 진료계획, 의료기관 변경 등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임의진료비용인 경우
 - ③ 화장품, 의약 외품 등 의료행위와 관련되지 아니한 비용
 - ④ 의지(義脂), 보조기, 간병,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
 - ⑤ 약국 약제비
 - ⑥ 소멸시효 완성 등 확인 제외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2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 휴업급여 청구

신청서
작성방법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4일이상의 요양(입원/통원)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전이라도 최저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우선 지급받고 평균임금산정 완료 후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저액 우선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휴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하십시오.
 - 단시간 근로자가 복수사업장에서 근무 중(일용근로자 제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 사업장 이외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휴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하십시오. (시행 '16. 7.1.)
- **휴업급여 청구** :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 또는 치료받고 있는 병원 소재지 관할지사로 제출합니다.
 - 다만, 업무상 재해 여부 및 재요양급여 결정에 있어 임금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이유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 각각 사업장 관할 지사 및 재요양급여 신청을 처리한 지사에서 지급합니다.
 - 추가제출자료 : 근로계약서,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의 임금대장, 본인 통장 사본, 기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청구 방법



- ▶ 앱마켓에서 “TOUCH 고용산재” 또는 “정부24”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한 후 앱(APP) 안내에 따라 급여청구

부분휴업급여

- 요양(재요양)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휴업급여입니다.
 - 부분휴업급여액은 취업한 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과 취업하지 못한 시간(8시간에서 취업한 시간을 뺀 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단, ①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② 부상·질병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의 2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70%)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 임금의 90%를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지급하나, 평균임금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 학생연구자에게는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령자 휴업급여

-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산재근로자가 61세에 도달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감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산재근로자 연령이 61세에 도달한 날부터 65세까지 매년 4/70씩 감액(최초요양 중인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4/90씩 감액)하여 65세 이후에는 50/70(저소득근로자의 경우 70/90)을 지급 합니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간은 감액하지 아니합니다.

3

장기요양환자가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 상병보상연금 청구

- 요양급여를 받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인 상병보상연금(평균임금의 약 70~90%)을 지급합니다.
-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받고자 하거나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변경된 때에는 상병보상연금 청구서에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치료받고 있는 병원 소재지 관할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중증요양상태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연간 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1일 상병보상연금액에 지급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상병보상연금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중증요양상태등급 심사일을 지정 통보하며 지정일자에 공단지사에서 중증요양상태등급을 심사합니다.
- 상병보상연금 지급 시작일부터 2년이 지나면 중증요양상태등급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이 1일당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액보다 적으면 그 휴업급여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합니다.
- 학생연구자에게는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4

치유 후 장애가 남은 경우

: 장애급여 청구

-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 장애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제출지사** : 치료를 종결한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지역본부)

등급	장애보상일수		연금대상 및 선급기간
	연금 일수	일시금 일수	
1급~3급	329~257일분	1,474~1,155일분	연금으로만 지급, 1~4년분까지의 2분의1을 선급가능
4급~7급	224~138일분	1,012~616일분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1~2년분까지의 2분의1을 선급가능
8급~14급	-	495~55일분	일시금으로만 지급

- 장애급여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 지사, 통합심사기관 및 장애전문진단 기관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으며, 장애심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
 - **공단지사 심사대상** : 해당과 전문의인 자문의사 1인의 심사 혹은 장애등급 결정에 필요한 경우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을 실시하거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 **통합심사대상** : 통합심사 대상 장애유형의 경우 공단지사의 심사 없이 전국11개 권역별 통합심사 기관에서 5인 이상 전문의로 구성된 통합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단지사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 **전문진단대상** : 전문진단 관할 지사의 대상 장애유형은 전문진단 병원에서 협의체를 거쳐 판정하고 최종적으로 관할 지사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전문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실시한 대상자는 통합심사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통합심사 대상 장애유형

| 장애 부위 · 계열별 대상

- 장애진단서 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이 경우 장애진단서 상 장애등급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되 장애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함이 명확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구분	장애부위 및 계열		대상장애		
			대상	제외	
가	눈	안구(양쪽)	기능장애	운동장애, 조절기능장애, 시야장애	50세 이상 또는 인공수정체 이식에 따른 조절기능장애
				시력장애(장애진단서 상 소견과 자문의사 소견이 장애등급을 달리하는 경우에 한함)	
나	귀	속귀 등(양쪽)	청력장애	난청(소음성난청, 재해성난청 등)	특별진찰 또는 의학자문 결과 장애 상태가 명확하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다	코	비강	기능장애	비호흡 및 후각 기능장애	
라	입		기능장애	씹는 기능장애 및 말하는 기능장애(연하장애, 미각장애, 성대마비장애포함)	치아 망실 수에 의한 장애
마			신경·정신	중추신경(뇌,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정신 계통장애	제12급 이하 장애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장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신경계통 장애	
				손의 파지력 제한에 따른 제12급 이상의 신경계통 장애	
바			흉복부 장기	흉복부 장기 장애(비뇨기, 외부생식기 포함)	- 장기 및 생식기 결손장애로서 영 제53조제1항 관련 [별표 6]에서 장애등급을 정하고 있는 경우 - 진폐증, COPD, 석면폐증
사	체간	척추		제11급 이상의 척추신경근 장애	
아	팔	팔, 손가락(좌 또는 우)	기능장애	제12급 이상의 관절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기능장애	팔 또는 다리의 인공관절 삽입 치환술, 관절 유합술(완전강직) 및 습관성 탈구 장애
				(팔 또는 다리의 동요관절 불안정성 및 가관절 장애 포함)	
자	다리	다리, 발가락(좌 또는 우)			

-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 장애. 다만,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결과 장애등급의 변경이 없는 경우 및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진폐장애는 제외합니다.
-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대상자 중 간병필요성(재)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간병필요성(재)평가를 함께 심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위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한 경우 예상 장애등급 등 일시지급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합니다.
- 부정수급조사 사건 중 장애등급 재결정이 필요한 경우.

| 통합심사기관별 관할지사

장애판정위원회	관할지사
서울본부	서울본부, 서울북부, 의정부, 서울성동, 남양주(5개소)
서울남부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관악, 서울서초(6개소)
강원본부	강원본부, 춘천, 강릉, 태백, 영월(5개소)
경인본부	경인본부, 인천북부, 부천, 고양, 파주(5개소)
수원지사	수원, 평택, 안산, 성남, 화성, 용인, 안양(7개소)
부산본부	부산본부, 부산동부, 부산북부, 울산, 양산, 부산중부(6개소)
창원지사	창원, 진주, 통영, 김해(4개소)
대구본부	대구본부, 대구북부, 대구서부, 포항, 구미, 경산, 영주, 안동(8개소)
대전본부	대전본부, 대전동부, 대전서부, 청주, 천안, 충주, 보령, 서산(8개소)
광주본부	광주본부, 목포, 여수, 제주, 광산, 순천(6개소)
전주지사	전주, 익산, 군산(3개소)

- ※ 제주지사의 경우 별표 2 통합심사 대상 중 제 12조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장애로 한정한다. 다만, 제3조의 2 제3항에 해당할 경우 출석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
- ※ 강원본부의 통합심사 대상 중 이비인후과 및 정신과 장애심사는 서울본부에서 심사

장애전문진단 대상 장애유형

| 장애 유형별 대상

- ▶ **장애진단 대상** : 팔(손가락), 다리(발가락) 및 척추부위(척수부위) 장애
 - 팔(손가락) 및 다리(발가락)부위 **관절운동기능장애(파지력 장애 포함)**
 - 화상으로 인한 관절운동기능장애와 동시에 남은 흉터장애 포함
 - ※ 장애급여청구서의 장애진단서상 관절운동기능장애 제14급, 인공관절치환술에 따른 장애, 동통장애(제12급·제14급) 및 흉터장애만 제시된 경우 제외, 관절융합술(완전장직)
 - 다리부위 **무릎 인대파열로 인한 동요관절장애**
 - **척추장애(척수손상 포함)**

| 장애전문진단 관할지사

전문진단	관할지사
안산병원	안산지사, 안양지사, 수원지사, 화성지사, 용인지사, 평택지사
인천병원	인천북부지사, 부천지사
순천병원	순천지사, 여수지사
동해병원	강릉지사, 태백지사, 영월지사
대전병원	대전지역본부, 대전동부지사, 대전서부지사, 천안지사, 청주지사
창원병원	창원지사, 진주지사, 통영지사, 김해지사
대구병원	대구지역본부, 대구북부지사, 대구서부지사, 경산지사, 구미지사

진폐보상연금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기초연금과 진폐장해 연금의 합을 월단위로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연간) :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
 - 진폐장해연금(연간) : 진폐고시임금의 연132일(1,3급), 연72일(5,7급), 연24일(9,11,13급)
 - ※ 2023년 진폐 고시임금 : 136,687원17전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 장해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 장해연금 수급자이면서 '08.7.10이후 치유된 자 중 다음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 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 ② 척추의 신경근 장애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 ③ 신체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 ④ 진폐에 따라 7급 이상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5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 간병급여 청구

- 간병급여는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은 자에게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 청구서에 간병요구도 평가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접수하면 공단에서는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실제 지출한 금액 등에 따른 간병급여를 지급합니다.
 - 해당지사 : 장해급여 지급을 결정한 지사(지역본부)
- 간병급여 지급 시작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간병 필요성을 재평가 할 수 있습니다.
- 간병장소가 ‘재가’이고, 간병인이 ‘가족’인 간병급여 수급자가 간병급여 자동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반복적인 청구서 작성 없이) 매월 5일 전월분의 간병급여를 자동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청구 방법



- ▶ 앱마켓에서 “TOUCH 고용산재” 또는 “정부24”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한 후 앱(APP) 안내에 따라 급여청구

6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유족급여 청구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며(수급권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 50%, 연금50% 가능),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 : 평균임금의 365일분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금액

-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족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

- 유족이 유족급여청구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합니다.
 - **제출지사** : 사업장 소재지 또는 사망 당시 산재보험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지사)
- 유족급여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업무상 사망여부를 검토하고, 유족연금이 지급 결정된 경우에는 유족의 계좌로 매월 1회 지급합니다.

진폐유족연금

-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진폐 유족연금은 산재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사망근로자의 장례를 지낸 경우

: 장례비 청구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 장례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지급합니다.

8

직장복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직업재활급여

|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 장애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애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산재근로자 중 타직장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 대상자 : 장애등급(1~12급) 해당자 또는 장애등급 제12급 이상을 받을 것이 명백한 자 중 직업 훈련 신청일 현재 직업복귀계획이 수립된 미취업자로서 타 법령 등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신청기간 및 횟수 : 장애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2회까지 신청

| 직장복귀지원금 등(사업주 지원)

-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각각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합니다.
 - * 장애등급(1~12급) 해당자 또는 장애등급 제12급 이상을 받을 것이 명백한 자

9

통장이 압류되어 보험급여를 받기 어려울 경우

: “희망지킴이 통장” 제도

| 희망지킴이통장 제도 안내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재해자 및 수급권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원의 압류결정통지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됨 ※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험 보험급여만 입금가능 (다른 금액 입금 불가, 일부 예산사업으로 지급되는 지원금, 수당 등 입금 불가)
발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 모든 은행 : 국민·농협은행·단위농협·신한·우리·KEB하나·기업·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새마을금고·산림조합·수협은행·단위수협·신협중앙회·우체국 ※ 제외 : 씨티은행,저축은행,SC제일은행,카카오·케이뱅크 등 일부 은행
거래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양수 불가 • 담보 제공 및 질권설정 불가 • 통장대출의 대출 계좌로 사용불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통장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납부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 납부 금액이 부족하거나 취소 등이 발생한 경우 고객이 직접 영업점 창구에서 납부 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받아야 합니다.

- 은행 및 상품별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확인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절차



※ 구비서류 : 요양(보험급여)결정 통지서, 연금증서(유족, 장애 연금 수급자인 경우)



단 1명의 근로자도 산재보상의
따뜻한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4

Chapter

산재보험
보상·재활 서비스
가이드



산재근로자 재활프로그램

- | | |
|---------------------------------|----|
| 1. 맞춤형 통합서비스 안내 | 46 |
| 2. 내일찾기(My job, Tomorrow)서비스 안내 | 49 |
| 3. 단계별 제공서비스 알아보기 | 50 |
| 4. 재활지원팀 및 소속기관 재활서비스 업무 안내 | 68 |

1 맞춤형 통합서비스 안내

| 맞춤형통합서비스란?

-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요양초기단계부터 개인별 특성에 맞는 요양·보상·재활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에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고객맞춤형 서비스입니다.

단계별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내용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요양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재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계획, 추가상병, 의료기관 변경, 재활보조기구 지급 등 - 집중재활치료지원, 주치의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복귀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복귀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리검사(다차원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 희망찾기프로그램, 멘토링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직장복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사업주 상담, 직업복귀소견서, 직업능력평가, 작업능력강화훈련 등) - 사업주지원금제도(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
회복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스포츠 지원·가족화합프로그램·사회적응프로그램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지원 • 직장복귀 지원 상담(경로 탐색) • 직장동료화합프로그램 • 직장적응훈련
직업 복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직장복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를 통한 원직장복귀 지원 - 원직장복귀 지원 상담 및 관련 지원금 지급(사업주) * (원직장복귀 전) 대체인력지원금 ➔ (원직장복귀 후) 직장복귀지원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직장 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 워크넷 구직등록, 취업알선기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 지급
생활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23년부터 신규선발중지, 기존선발자만 졸업 시까지 지원)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서비스 대상 분류기준 및 집중지원 대상

- **대상자 분류** : 산재장해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산재근로자 중증도지수*를 활용하여 요양승인 시 장해예상군으로 분류되는 대상자 집중 지원
 - * 산재근로자 중증도지수는 요양승인 결정과 동시에 전산으로 자동 분류됨

산재근로자 중증도지수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 경중(노동능력회복률)을 나타내는 지수로 6단계로 구분

- ▶ **(결정요인)** 상병코드, 상병부위, 연령, 재해구분
- ▶ **(중증도지수 구분)** 극도(1~3급), 고도(4~7급), 중등도(8~9급), 경도(10~12급), 경미(13~14급), 무장해

서비스 제공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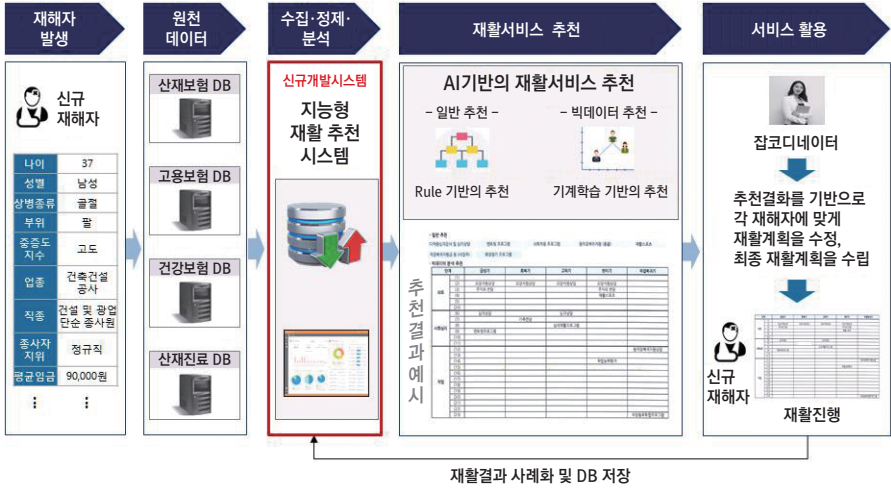


- ① **내일찾기서비스** : 의료 · 직업 · 사회재활업무를 통합 제공
- ② **일반서비스** : 신체회복 중심의 의료재활 및 (필요시) 재활업무 지원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재활추천시스템 운영

-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별 특성에 따라 직업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최적의 재활계획을 제공하는 AI 시스템
 - **플랫폼 구축** :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공단 직영병원의 의료 데이터를 연계하여 산재 근로자 중심의 데이터 플랫폼 구성
 - **추천시스템 개발** : 데이터 기반 재활 적합자를 분류(최초상담, 내일찾기)하고 개인별 차별화된 재활추천 서비스를 재활계획으로 설계하여 제공
- ※ 우선상담지수, 내일찾기 선정지수, 맞춤형 재활계획 추천 제공

지능형재활추천시스템



2 내일찾기(My job, Tomorrow)서비스 안내

☑ 제대로 치료받고 회복하여 다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전문가와와의 상담을 통해 내일찾기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재해로 인해 신체기능이 많이 손상되었거나 신체장애의 잔존 등이 예상되어 다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산재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의 요양·보상·재활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에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서비스로,
 - 손상된 신체기능을 최대한으로 회복하고 사회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원활한 사회 및 직업복귀를 지원하게 됩니다.
 - 이를 위해 사회복지전문가인 우리 공단의 “잡코디네이터”가 전담하여 통합적·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서비스 제공내용

산재발생	재활 상담	• 치료부터 직장복귀까지 재활상담 및 요양·재활서비스 안내
	의료 재활	• 추가상병치료, 병행치료, 의료기관 변경, 집중재활치료, 재활보조기 지급 • 주치의사 상담 실시
치료중	사회심리 재활	• 일상복귀지원서비스제공을 위한 심리검사(다차원심리검사), 심리상담서비스 (심리안정) 희망찾기,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가족화합프로그램 • (재활스포츠) 치료 중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스포츠시설 수강료 지원
	직업재활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원직장복귀지원) • 원직장복귀 지원 :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 등 * 요양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지원 • 원직장복귀 불가능시 타직장취업·창업 준비 지원(재활지원팀 연계) - (타직장취업) 직업훈련지원, 취업상담 및 취업준비교육 연계
치료종결 이후	사회심리 재활	• 사회적응프로그램 : 사회복귀 및 직업활동 적응력 강화 지원 • 재활스포츠 : 신체능력 강화를 위한 스포츠시설 수강료 지원
	합병증 등 예방관리	• 상병의 악화, 재발 방지를 위한 진료 지원
	직업복귀 지원	• 원직장복귀시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원직장복귀 불가능시 타직장취업 지원(재활지원팀 연계) - (타직장취업) 직업훈련지원, 취업지원(전문기관 연계)

3 단계별 제공서비스 알아보기

요양단계 제공 서비스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란?

- 사업주가 소속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 후 수행하게 될 직무 등을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산재 근로자에게 직장복귀에 필요한 재활서비스(신체능력회복 등 집중재활치료·작업능력강화 훈련, 직장동료통합프로그램, 사업주상담 등)를 지원하고, 동시에 사업주에게는 사업주지원제도(대체 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를 안내하고 신청을 연계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또한 필요시 소속 산재근로자의 신체 회복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직업복귀소견서 제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 사업주 : 적용대상 산재근로자의 재해당시 사업주
- 산재근로자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
(사업주에게 예상치료 기간 등 요양정보 제공 동의자에 한함)

※ 지원제외 : 원직복귀 비희망자, 건설 일용 근로자, 불법외국인, 원직장이 폐업된 사업장의 근로자, 요양결정 당시 이미 요양 종결된 산재근로자 등

| 지원절차 |





사업주 지원제도 내용

- (대체인력지원금) 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체인력을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60만원 범위 내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장해 12급 이상자/예정자)를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직장복귀지원금 : 월 45~80만원(최대12개월)까지 지원
 - 직장적응훈련비 : 직장적응훈련(직접 또는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월 최대 45만원(3개월)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
 - 재활운동비 : 신체 능력회복 지원 위한 재활운동비를 월 15만원(3개월) 지원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과 지원 내용

-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동해병원 및 서울·부산·광주의원('23년1월 기준)

| 지원내용 |

- ▶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에 필요한 기본 직무분석, 직업능력평가, 작업능력강화훈련, 직업복귀소견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 기본직무분석
 - 목표로 하는 직무에 대한 세부내용, 신체요구도 및 환경 등 직장복귀에 필요한 직무에 대한 분석을 말합니다.
 - 직업능력평가
 - 목표 직무수행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의료기관 내 평가입니다. 직무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핵심 직무 및 복귀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에 대하여 표준화된 직업능력평가 전문장비와 기타 재활평가장비를 활용하여 직무와 유사한 평가 내용을 구성하여 개별맞춤식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추가적으로 재활치료, 작업능력강화 훈련 등의 재활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하고, 직업복귀에 대한 의학적 판단 보조에 활용합니다.
 - 작업능력강화훈련
 - 직업능력평가 결과 필요한 직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어려운 경우,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훈련입니다. 작업능력강화 훈련은 ① 수상부위, 전반적 신체기능 및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한 신체기능강화훈련, ②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작업동작을 모사하여, 단계적으로 작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모의작업훈련, ③ 상병부위의 보호 및 추가적인 손상 방지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합니다.

• **직업복귀 소견서**

-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직무복귀, 직무전환, 직무복귀 시 권고사항)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공합니다.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시 소속 산재근로자의 정보제공 동의 필요



작업능력평가
(사전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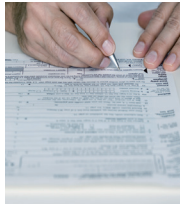
신체기능 향상



모의 작업훈련,
사업장 훈련지도



작업능력평가
(사후평가)



직업복귀소견서

일상복귀지원서비스 통합제공

- 하나의 우수한 재활기관에서 필요한 일상복귀지원서비스를 요양단계별로 연속 제공하기 위한 통합제공기관을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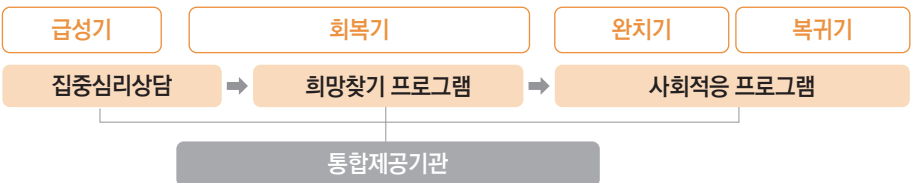
- ①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산재근로자

| 운영목적 |

- ① 우수 수탁기관의 전문 노하우 활용한 서비스 대상자 조기 발굴 및 적기 서비스 제공 · 관리로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

| 서비스 내용 |

※ 통합제공기관에서 요양초기부터 요양단계별로 유기적·연속적으로 산재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연계 제공



심리상담서비스

- 불안, 가족 및 대인관계, 직업 및 사회적응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개별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 ④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산재근로자
 - 다차원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제공
 - * **다차원심리검사** : 산재 사고 이후 산재근로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심리적·정신적 증상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심리검사

| 서비스 내용 |

- ④ **기초심리상담**
 - 다차원심리검사 후 지역본부(지사)의 심리상담 담당자에 의한 심리상담 서비스
- ④ **집중심리상담**
 - 기초심리상담 후 필요한 경우 전문심리상담기관을 통한 심리상담 서비스
 - **상담횟수** : 산재근로자 1인당 1개 기관에 대하여 상담횟수는 3개월이내 8회로 실시(필요시 2회 연장)
 - **심리검사** : 다양한 심리진단을 위한 검사비용 지원
 - **교통비지원** : 집중심리상담기관 방문시 지원



“마음이 바뀌면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찾기프로그램

- 스트레스, 불안감 등 사고이후에 느꼈던 마음을 심리상담 전문가의 진행으로 동료 산재 근로자와 함께 나누고 사회·직업복귀 준비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① **요양 중인 자**(정서적 지지를 위하여 가족 및 간병인 참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내용]

- ① **운영기관** : 산재보험의료기관 또는 전문기관(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 위탁 운영
- ② **운영기간** : 3월~11월(주 1~2회 2시간이내, 총 4~6회)

구 분	4회기	6~8회기	공 통
대상자	요양 중 산재근로자		가족·간병인 참관가능
인원편성	3~5명 (기준인원 5명, 최소인원 3명)	6~10명 (기준인원 10명, 최소인원 6명)	가족포함 15명 이내
프로그램	(목적) 자아효능감 증진 → 구직효능감 향상		재활사업소개, 설문(만족도)조사
	희망찾기 표준모델 단축형	희망찾기 표준모델	
운영주기	1주당 1~2회	1주당 2~3회	1회당 2시간

멘토링프로그램

- 직업 및 사회복귀에 성공한 산재 경험자를 멘토로 위촉하여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심리적 불안해소와 자신감 회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

- ②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필요시, 요양종결 3개월 이내 산재근로자)

| 프로그램 내용 |

- ② 지원활동 : 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 강의, 작업능력평가 동행 등
- ② 지원횟수 : 요양중인 산재근로자 1인당 최대 6회

취미활동반지원

-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 이환자가 요양기간 중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취미 활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 ②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의 입원환자수가 월평균 10인 이상인 의료기관 중 취미활동반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

| 지원내용 |

- ② 지원내역 : 취미활동반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강사료 등
- ② 지원금액 : 1인당 월 8만원 한도, 작품전시회, 의료기관별 취미활동반 합동행사 시 특별 지원금

가족화합지원프로그램

-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이 함께하는 ‘힐링캠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 ②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 기간 및 내용 |

- ② 기간 : 6월~11월
- ② 운영기관 : 외부 전문기관에서 위탁 운영
- ② 실시내용 : 산재근로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상담, 치유프로그램, 만들기 체험 등이 포함된 힐링캠프 운영

회복단계 제공 서비스

재활스포츠지원

- 상병 및 장애부위에 대한 운동능력 회복을 돕기 위해 재활스포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 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요양 중인 사람으로서 의학적 소견상 장애급여 결정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일반, 특수)
- ② 장애급여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요양종결 후 1년 이내의 사람(일반)

| 지원내용 |

구 분	일반 재활스포츠	특수 재활스포츠
지원종목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배드민턴, 스크린골프·야구, 실내양궁 및 패키지 프로그램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
지원범위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간 지원	월 60만원 범위 내에서 1개월간 지원

사회적응프로그램

- 요양종결 예정자 및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생활 및 직업 활동 적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참가대상 |

- ① 장애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및 통원요양 중인 자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프로그램 내용 |

- ① 운영기관 : 전문기관(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 위탁 운영
- ② 운영기간 : 3월~11월(1개 운영반 당 3개월 내 운영)
- ③ 프로그램내용 : 심리기능향상프로그램, 사회기능 및 직업기능향상프로그램

직업복귀단계 제공 서비스

원직장복귀 지원

- 원래의 사업장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 및 해당 사업주에게 필요한 원직장복귀 서비스 제공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 ④ 원직장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 및 해당 사업주

| 지원내용 |

④ 원직장복귀 전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 사업주는 소속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복귀 후수행하게 될 직무 등을 공단에 제출

산재근로자 공단은 산재근로자에게 직장복귀에 필요한 재활서비스(신체능력회복 등 집중재활 치료·작업능력강화훈련·직장동료화합프로그램, 사업주상담 등)를 지원

사업주 사업주지원제도(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를 연계·안내하고 필요시 직업복귀소견서 발급 등을 지원

● 직장적응훈련비

- 요양 중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비용 지원
※ 요양종결 이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대체인력지원금

-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업무공백 때문에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규모사업장(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 일부 지원

● 직장동료화합프로그램 : 산재근로자와 직장동료가 함께하는 간담회, 야유회 등 지원

④ 원직장복귀 후

● 직장복귀지원금 등

- 산재근로자(1~12급)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직장복귀지원금(월 45만원~80만원이내, 최대 12개월), 직장적응훈련비(월 45만원 이내, 최대 3개월), 재활운동비(월 15만원 이내, 최대 3개월)

●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직무지원 보조기구 지원(재활공학연구소)

● 매년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우수기업 선정·포상



산재근로자 치료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 안돼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노동청·지방노동위원회

타직장취업 지원



직업훈련지원

- 요양(통원) 중 또는 요양 종결 후 타직장취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에게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등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 ① 직업훈련지원 신청일 현재 산재장해 제1급~제12급 판정자
- ①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제1~12급)가 예상된다는 의학적 소견 있는 자
- ①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
 - ※ 취업 : 일용직으로 1개월 동안 취업일수 10일 이상, 1주 동안 15시간 이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①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훈련가능 직종 |

- ① HRD - Net(www.hrd.go.kr)에 등록된 인증과정(재직자 교육과정 제외)
- ①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훈련과정
- ① 대형면허 및 특수면허 등

| 신청기간 및 횟수 |

- ① 신청기간 :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 ① 신청횟수 : 2회 이내
- ① 훈련기간 : 총 12개월 이내

훈련비용(훈련기관 지급)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훈련 :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한도 내 지원
- 위 훈련기관 이외 : 1인당 600만원 한도 내 지원

훈련수당(산재근로자 지급)

구분	지급기준	비고
장해판정일 2020.2.1. 이후	1일당 최저임금액 100%	훈련일수 및시간에 따라 차등지급
장해판정일 2020.1.31. 이전	1일당 최저임금액 100% (장해판정일~1년 이내)	
	1일당 최저임금액 50% (장해판정일 1년 경과~3년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개정(’21.2.1.시행)에 따른 훈련수당 지급기준 적용

- ⊕ 매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 ⊕ 장해보상연금(진폐연금) 수급자는 연금액과 훈련수당 조정됩니다.

타직장취업 연계 서비스

- 타직장취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에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자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을 통한 취업지원’, 연계 등 타직장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 타직장취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

지원내용



| 신청방법 |

- ② 가까운 소속기관 또는 재활지원팀 방문·상담 후 '산재근로자 취업지원 참가신청서' 작성

| 지원금 지급 |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단계(참여수당) : 최대 15~25만원

- 2단계(훈련지원수당) : 최대 월 284천원(최초 훈련개시일 기준 6개월까지 지급)

※ 2단계 직업훈련은 산재 직업훈련(최장 12개월)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훈련수당은 훈련과정에 따라 최대 약 200만원 지원

② 취업지원 위탁사업(운영기관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상담, 취업능력향상교육, 취업알선(취업정보), 동행면접 등
- 취업활동비 : 1회당 2만원(최대 1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 대상근로자

필요조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I 유형	요건 심사형	15~69세 (고용여건 등 고려, 고시로 69세까지 참여 자격 인정)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 : 120% 이하)	4억원 이하 (청년특례 :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II 유형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저소득층 등		무관	무관	무관
	청·장년층		청년 : 무관 중장년 : 중위소득 100% 이하	무관	무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특정계층-산재장애인)

• 자격요건

- 미취업 산재장애인(장애1~14급)
-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추천 받은 자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상기 제외대상은 '17년부터 장애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업 이관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우선 연계

▶ 단계별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프로그램 및 단계별 지원내용

구분	1단계(상담·진단)	2단계(직업능력향상)	3단계(취업알선)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취업역량평가 • 직업심리검사 및 맞춤형 상담 등 • 개인별취업활동계획(IAP)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 • 일경험지원 •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취업알선 • 구인정보 제공 • 동행면접 	
지원내용 (II유형)	저소득층 등 (특정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 •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비 최대 500만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284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3개월 • 취업성공 시 최대 150만원
	청년, 중장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 • 참여수당 최대 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비 최대 3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 최대 10~35%) • 훈련참여지원수당 284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3개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지원

- 요양종결 된 산재근로자 중에서 합병증 등으로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요건 |

- Ⓢ 요양이 종결된 산재근로자 중 장애급여를 지급결정 받은 자 또는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에 대해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대상에서 정하고 있는 인정범위에 해당된다고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

| 지원대상 |

- Ⓢ 논의 장애에 따른 예방관리 등 총 11종 44개 상병

| 지원내용 |

- Ⓢ 해당 예방관리 증상별로 정하고 있는 진료인정기준(진찰, 검사, 약제, 처치, 물리치료 등) 범위 내에서 진료 또는 약제비용 지원

| 지원 제한사항 |

-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개인질환 약제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 Ⓢ 증상별로 정한 진료인정기준에서 명시되지 않은 검사, 처치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 합병증 등 예방관리로 승인된 유효기간 내에서만 예방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방관리 의료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에 의료기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응급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예방관리 증상과 동일한 사유로 재요양을 한 경우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안정을 위한 제공 서비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산재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 저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

| 융자대상 |

③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자

- ① 산재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②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 받은 자
- ③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₂) 질병판정자
- ④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 (의료비·훈례비·장례비에 한함)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 4,434,816원

| 융자한도 및 조건 |

- ③ 융자한도액 : 1세대 당 2,000만원 이내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

의료비·훈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	주택이전비·차량구입비·사업자금
1,000만원	1,500만원

- ③ 융자이율 : 연리 1.25%
- ③ 융자기간 : 5년 이내이며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 가능
- ③ 상환방식 :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 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 ③ 대행금융기관 : 우리은행(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앱을 이용한 융자)
- ③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0.7%이내 별도 부담)

| 신청기한 |

응자종류	신청기한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케어센터 운영

- 산재장해인(1~3급) 및 고령·중증 진폐장해인에게 주거 및 생활공간 제공을 위한 전문 복지시설을 운영합니다.

| 입소대상 |

① 경기요양병원부설케어센터

- 만 60세 이상의 산재 장해등급 1~3급 종결자로 별도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
※ 케어센터 자체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 가능

② 태백병원부설케어센터

- 만 60세 이상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폐장해인 및 비진폐장해인
(COPD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케어센터 자체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 가능

| 입소비용 |

① 경기요양병원부설케어센터

- 제1급~제2급 등급별 간병급여, 제3급 센터장이 산정한 직전년도 입소비에 간병급여 인상될 경우 상시 및 수시간병급여 고시금액 변동률의 평균을 적용

② 태백병원부설케어센터

- 직전년도 입소비를 기준으로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등락률(전년비) 적용

사업주를 위한 서비스

대체인력지원금

- 산재근로자 요양기간 중 업무공백으로 신규 대체근로자를 고용한 후 해당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 시킨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 ⊕ 사업주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 ⊕ 산재근로자 :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기간 2개월(60일) 이상이면서, 고용의 단절없이 원직복귀하여 30일 이상 고용 유지
- ⊕ 대체근로자 :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여 [대체근로자가 퇴사한 날(고용 종료일의 전날) 또는 산재근로자가 원직복귀한 날의 전날 중 빠른 날을 기준] 30일 이상 유지

| 지원제외 대상 |

- ⊕ 사업장 : 산재보험료 체납, 대체근로자에 대한 타법령 지원금 수령, 지급기간 내 다른 근로자 고용조정(경영상의 필요 등에 한정)
- ⊕ 대체근로자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미가입자, 건설일용직, 파견근로자, 불법 외국인 근로자 등

| 지원수준 |

- ⊕ 대체인력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 청구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1개월(30일)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시 지급 가능

직장복귀지원금

-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① 산재장해인*을 원직장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

* 장해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으로 치유후 장해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 있는 자

| 지원조건 |

- ① 산재장해인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 지원기간 및 금액 |

- ① 최대 12개월 범위 내(최소 540만원~최대 960만원)

장해구분	제1급~제3급	제4급~제9급	제10급~제12급
상한 고시금액	월 800,000원	월 600,000원	월 450,000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장해인에게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해당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 ① 원직장복귀한 산재장해인*에게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직장적응훈련비는 위탁업체도 가능)

* 장해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으로 치유후 장해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 있는 자

| 지원요건 |

- ⊕ **직장적응훈련비** :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직접(현장) 훈련(사전 신청서 제출, 위탁훈련)
- ⊕ **재활운동비** :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자체시설 또는 외부 스포츠시설에서 실시

| 지원기간 및 금액 |

- ⊕ 최대 3개월까지

구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고시금액	월 450,000원	월 150,000원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범위 내 실제 든 비용 지급. 단, 직장적응훈련 중 직접(현장)훈련은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4

재활지원팀* 및 소속기관 재활서비스 업무 안내

구분	관할 소속기관	소속기관(재활지원팀)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홍보 및 지원) 타직장 취업지원 희망자 또는 신청자(대면·유선 홍보 및 상담) • 각종 사업 안내 및 신청서류 작성 지원 	
업무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직장 취업지원 사업 안내 및 신청서 작성 지원(작성 서류 재활지원팀으로 이송) ※ 노동보험 또는 웰코넷 • 원직복귀 지원 업무 (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등) • 일상복귀지원사업 수행 • 기존 창업점포 사후관리 (이자납부, 운영실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 대상자 선발(선정), 비용 및 수당 지급, 훈련 후 타직장 취업지원연계 • (타직장취업 연계서비스) 워크넷 구축등록, 국민 취업지원제도, 장애인취업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취업지원 기관 연계(건설, 노인, 여성 등),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설명회(채용박람회) 개최 • (그 외) 장학사업, 직장동료화합프로그램 및 가족 화합지원프로그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재활지원팀 수행 업무(타직장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외 재활서비스는 관할 소속기관에서 수행 	

* 재활지원팀 : 11개소 운영 중, 7개 지역본부 및 서울남부, 창원, 수원, 전주

| 권역별 재활지원팀 안내

소속기관 (재활지원팀)	관할 소속기관	대표전화
서울지역본부	서울본부, 서울북부, 의정부, 남양주, 서울성동	02-2230-9423, 9439
서울남부지사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관악, 서울서초	02-2165-3291, 3296
부산지역본부	부산본부, 부산동부, 부산북부, 울산, 양산, 부산중부	051-661-0245, 0258
창원지사	창원, 김해, 진주, 통영	055-268-0228, 0229
대구지역본부	대구본부, 대구북부, 대구서부, 포항, 구미, 경산, 영주, 안동	053-601-7516, 7561
경인지역본부	경인본부, 인천북부, 부천, 고양, 파주	032-451-9335, 9336
수원지사	수원, 화성, 용인, 평택, 안양, 안산, 성남	031-231-4425, 4427
광주지역본부	광주본부, 목포, 여수, 제주, 광산, 순천	062-608-0137, 0187
전주지사	전주, 익산, 군산	063-240-8172, 8179
대전지역본부	대전본부, 대전동부, 대전서부, 천안, 충주, 보령, 서산	042-870-9564, 9565
강원지역본부	강원본부, 춘천, 강릉, 태백, 영월	033-749-2330, 2329

산재보험
보상·재활 서비스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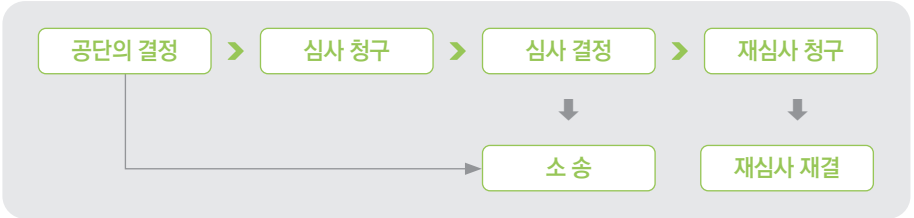
Chapter



산재보험 이의제기 절차

- | | |
|--|----|
| 1. 심사(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 70 |
| 2. 고객권익보호담당관(공인노무사)의
무료 상담서비스 운영 안내 | 72 |

1 심사(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 공단이 행한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이를 심사 청구라 함), 이의제기에 따른 결정내용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를 재심사청구라 함).
- 심사(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 등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보험급여 등의 결정을 한 우리 공단 지사에 심사(재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심사청구는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고용·산재 토털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하시면 온라인 심사청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주소 : <https://total.comwel.or.kr>)
- 또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재심사청구 과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① 공단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 심사청구(또는 행정소송)
 -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지사에 제출
 - 제출지사 : 보험급여 등의 결정지사
 - 청구할 수 있는 기한 :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지사에서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본부로 송부 (접수 후 5일 이내)

- 공단본부에서는 이를 접수·심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본부에 접수된 날부터 60일(1회에 한하여 2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심사 결정 후 그 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② 심사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 재심사청구(또는 행정소송)

- 심사청구와 같은 방식으로 재심사청구 제기
 - 제출지사 : 보험급여 등을 결정한 지사(심사청구 제출지사와 동일)
 - 청구할 수 있는 기한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심사기관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결과통보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60일(1회에 한하여 20일 연장 가능) 이내 심리·재결 후 통보

③ 재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 행정소송

-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기할 수 있는 기한 : 보험급여 등의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제기기관 : (행정)법원

2

고객권익보호담당관(공인노무사)의 무료 상담서비스 운영 안내

- 산재 보상에 대한 각종 불이익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의 절차나 작성방법 등 고객의 고충 사항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사)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무료상담(공단 방문 또는 전화)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객권익보호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지역	상담 요일	상담시간	전화번호	상담지역	상담 요일	상담시간	전화번호
서울본부	화	13:30~17:30	02-2230-9551	서울남부 지사	목	13:30~17:30	02-2165-3237
부산본부	화, 목	13:30~17:30	051-661-0255	창원지사	목	13:30~17:30	055-268-0110
울산지사	화	13:30~17:30	052-226-4481	대구본부	화, 목	13:30~17:30	053-601-7138
경인본부	화, 목	13:30~17:30	032-451-9396	수원지사	화	13:30~17:30	031-231-4456
안산지사	목	13:30~17:30	031-481-4193	광주본부	화, 목	13:30~17:30	062-608-0291
전주지사	화	13:30~17:30	063-240-8272	대전본부	화, 목	13:30~17:30	042-870-9540
청주지사	수	13:30~17:30	043-2229-5419	강원본부	목	13:30~17:30	033-749-2333

산재보험
보상·재활 서비스
가이드



Chapter



보험급여 지급기준 참고자료

- | | |
|----------------|----|
| 1. 보험급여 지급기준 | 74 |
| 2. 2023년 고시 모음 | 80 |

1 보험급여 지급기준

평균임금 증감

- 공단은 장기간 요양하는 산재근로자 및 연금수급자의 실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 근로자의 연령이 63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직권으로 평균임금을 증감합니다.
- 공단의 평균임금 증감처리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균임금 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합니다.

| 제출지사 |

- ①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지사
- ① 장애급여 및 유족급여는 당해 급여를 지급 결정한 지사

재활보조기구 지급

| 최초지급 |

- ① 산재보험 요양 종결시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요양 중에도 가능 합니다.

요양 중 재활보조기구 지급기준

- 사지절단 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 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관절손상 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하지골절 등으로 요양하는 동안 목발 또는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추가지급 |

- ⑦ 최초로 지급받은 재활보조기구의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신체변형 등으로 수리를 하여도 계속 장착하기가 부적절하거나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지급 할 수 있습니다.

| 지급품목 |

- ⑦ 총 219개 품목
 - 의지·보조기 등 재활보조기구는 101개 품목(건강보험 78개 + 산재보험 23개), 수리료는 118개 품목(건강보험 8개 + 산재보험 110개)

보험급여 일시중지

-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보고 등의 의무 또는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일시중지 사유

- 요양 중인 근로자가 공단의 전원 요양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보고서류제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진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급여지급제한

- 공단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애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경우나 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 등 고의로 장애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지급제한 보험급여 범위

- 요양에 관한 지시위반에 따른 장해상태 악화 또는 치유 방해
 - 보험급여 지급제한 결정날 이후 발생하는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 **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장애 등 고의로 장애 상태 악화시킨 경우**
 - 장애상태가 종전의 장해등급보다 심해진 경우에도 종전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
 - 장애상태가 종전의 장해등급보다 호전되었음이 의학적 소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재판정 전에 장애상태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그 호전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 **지급제한의 통지**
 - 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간병료 지급기준

- 간병료 지급기준은 2009.7.1.부터 산재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등급·2등급·3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간병 필요등급 적용 일반사항

- 중환자실, 회복실 또는 폐쇄병동, 완화의료(호스피스)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일시적이거나 예외적인 상황은 제외하고 반복적이고 통상적인 수행능력의 수준(빈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 간병대상 산재근로자의 부상·질병상태가 둘 이상 있으면 원칙적으로 중한 상병에 대한 간병 필요등급을 적용합니다.
- 환자의 부상·질병상태가 산재승인 상병이 아닌 환자의 개인질환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산재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제공 받는 경우
 - 그 간병인이 가족 또는 기타 간병인이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자격(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을 가지만 그 자격에 해당하는 간병료 고시금액을 적용합니다.

간병범위별 세부 적용 등급

간병의 범위	1등급	2등급	3등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없음	해당	해당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해당	해당	해당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해당	해당	해당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없음	없음	해당
5. 체표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해당	해당	해당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없음	해당	해당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해당	해당	해당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해당	해당	해당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없음	없음	해당
10.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해당	해당	해당



장해등급별 장애급여 지급일수

(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급	장해보상일시금
제 1급	329일분	1,474일분
제 2급	291일분	1,309일분
제 3급	257일분	1,155일분
제 4급	224일분	1,012일분
제 5급	193일분	869일분
제 6급	164일분	737일분
제 7급	138일분	616일분
제 8급	-	495일분
제 9급	-	385일분
제10급	-	297일분
제11급	-	220일분
제12급	-	154일분
제13급	-	99일분
제14급	-	55일분




상병보상연급표

중증요양상태등급	상병보상연급
제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급 지급기준

연령	중증요양상태 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
61세		평균임금 × (329/365 - 0.04)	평균임금 × (291/365 - 0.04)	평균임금 × (257/365 - 0.04)
62세		평균임금 × (329/365 - 0.08)	평균임금 × (291/365 - 0.08)	평균임금 × (257/365 - 0.08)
63세		평균임금 × (329/365 - 0.12)	평균임금 × (291/365 - 0.12)	평균임금 × (257/365 - 0.12)
64세		평균임금 × (329/365 - 0.16)	평균임금 × (291/365 - 0.16)	평균임금 × (257/365 - 0.16)
65세 이후		평균임금 × (329/365 - 0.20)	평균임금 × (291/365 - 0.20)	평균임금 × (257/365 - 0.20)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

1.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및 제56조(재요양 중의 휴업급여) 해당자. 다만, 동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액이 아래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연령	지급액
61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70
62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2/70
63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8/70
64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4/70
65세 이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0/70

2.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산재보험법 제54조제1항 본문 및 제54조제2항) 해당자

연령	지급액
61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6/90
62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2/90
63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8/90
64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4/90
65세 이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0/90

3.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산재보험법 제54조제1항 단서조항)해당자

연령	지급액
61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6/90
62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2/90
63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8/90
64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4/90
65세 이후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0/90

2 2023년 고시 모음



평균임금 증감률

(단위 : %)

적용기간	전체근로자의 임금평균액 증감률	소비자물가 변동률
2018. 1. 1. ~ 2018. 12. 31.	3.20	1.54
2019. 1. 1. ~ 2019. 12. 31.	4.24	1.65
2020. 1. 1. ~ 2020. 12. 31.	3.66	1.13
2021. 1. 1. ~ 2021. 12. 31.	1.95	0.36
2022. 1. 1. ~ 2022. 12. 31.	2.83	1.15
2023. 1. 1. ~ 2023. 12. 31.	5.43	3.82



연도별 최고보상기준

(단위 : 원)


적용기간	최고보상금액	비 고
2018. 1. 1. ~ 2018. 12. 31.	205,686	1일 단위
2019. 1. 1. ~ 2019. 12. 31.	214,402	
2020. 1. 1. ~ 2020. 12. 31.	222,244	
2021. 1. 1. ~ 2021. 12. 31.	226,191	
2022. 1. 1. ~ 2022. 12. 31.	232,664	
2023. 1. 1. ~ 2023. 12. 31.	246,036	



연도별 최저보상기준 및 최저임금액


(단위 : 원)

적용기간	최저보상기준	최저임금(시급)
2018. 1. 1. ~ 2018. 12. 31.	57,135	7,530(일 60,240)
2019. 1. 1. ~ 2019. 12. 31.	66,800	8,350(일 66,800)
2020. 1. 1. ~ 2020. 12. 31.	68,720	8,590(일 68,720)
2021. 1. 1. ~ 2021. 12. 31.	69,760	8,720(일 69,760)
2022. 1. 1. ~ 2022. 12. 31.	73,280	9,160(일 73,280)
2023. 1. 1. ~ 2023. 12. 31.	76,960	9,620(일 76,960)

 연도별 장례비 최저·최고보상기준


(단위 : 원)

적용기간	최고금액	최저금액
2018. 1. 1. ~ 2018. 12. 31.	15,069,990	10,763,580
2019. 1. 1. ~ 2019. 12. 31.	15,554,290	11,097,760
2020. 1. 1. ~ 2020. 12. 31.	15,867,020	11,438,960
2021. 1. 1. ~ 2021. 12. 31.	16,334,840	11,729,120
2022. 1. 1. ~ 2022. 12. 31.	16,775,750	12,082,820
2023. 1. 1. ~ 2023. 12. 31.	17,241,680	12,460,160

 간병료 기준금액

(단위 : 원)

구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2009. 7. 1. ~ 2014. 7. 31.	전문간병인	67,140	55,950	44,760
	가족·기타간병인	57,360	47,800	38,240
2014. 8. 1. ~	전문간병인	67,140	55,950	44,760
	가족·기타간병인	61,750	51,460	41,170

 연도별 간병급여 지급액

(단위 : 원)

적용기간		상시간병	수시간병
2012. 1. 1. ~ 2012. 12. 31		38,240	25,490
2013. 1. 1. ~ 2013. 12. 31		38,240	25,490
2014. 1. 1. ~ 2014. 7. 31		38,240	25,490
2014. 8. 1. ~ 2020. 12. 31		41,170	27,450
2021. 1. 1. ~	전문간병인	44,760	29,840
	가족·기타간병인	41,170	27,450



기타 고시금액

(단위 :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진폐고시임금(일)		125,661원86전	129,257원55전	136,687원17전
(진폐)진단수당(일)		50,000	50,000	50,000
직업 재활 급여	훈련생 1인당 직업훈련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비 전액 :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장애인고용공단 위탁훈련 • 1인당 600만원 한도 : 위 훈련 외 직업훈련 		
	장애인공단 위탁훈련비용			
	직장복귀지원금(장해1급~3급)	월 800,000	월 800,000	월 800,000
	직장복귀지원금(장해4급~9급)	월 600,000	월 600,000	월 600,000
	직장복귀지원금(장해10급~12급)	월 450,000	월 450,000	월 450,000
	직장적응훈련비	월 450,000	월 450,000	월 450,000
	재활운동비	월 150,000	월 150,000	월 150,000

산재보험
보상·재활 서비스
가이드



Chapter

7

알면 도움되는 Tip

1. 다양한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	84
2. 가정간호 방문서비스 제공 안내	85
3. 케어센터 입소 안내	86
4.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안내	87
5. 근로복지공단 산업보건사업 안내	88
6.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의료재활사업 안내	89
7.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사업 안내	91
8. 산재보험 재활인증 의료기관 안내	92
9. 산재보험 화상인증 의료기관 안내	99
10. 산재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이용 안내	100
11. 외부기관의 재해근로자 지원 사업 안내	103

1 다양한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하여 다른 기관 방문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신청 대상 |

- ① 복지서비스 의뢰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

| 제공내용 및 절차 |



| 신청 |

- ① 가까운 지역본부(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 '복지서비스 의뢰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 복지서비스 종류 |

- ① 생계비, 임대주택, 의료비, 집수리, 교육비, 양육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진로지도, 재무상담, 돌봄서비스, 쉼터/시설입소, 상담치료, 급식지원, 학습지원, 법률지원, 장애인등록 지원 등

2 가정간호 방문서비스 제공 안내

☑ 가정전문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찾아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교통약자인 중증 산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이동편의 도모, 상병 악화 및 합병증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독립생활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간호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제공기관 |

- ②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 제공대상 |

- ② 치료종결 후 산재장애등급 1~3급자(1급 : 3·4·8호, 2급 : 5·6호, 3급 : 3·4호) 중 가정간호 방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공방법 |

- ② 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병원에서 대상자 사전면담 후 서비스 대상으로 결정되면 가정전문간호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진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공내용 |

- ② 기본간호, 치료적 간호, 검사, 투약 및 주사, 교육 및 훈련, 상담, 의뢰 등
※ 방문료(교통비 포함)를 포함하여 현물급여 지원



| 문의 |

- ② 장애등급 결정 공단 지역본부(지사) 또는 인천병원, 안산병원 가정간호실

3 케어센터 입소안내

태백병원부설케어센터

- 진폐장해인 및 비진폐장해인(COPD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에게 주거 및 생활공간 제공을 위한 전문 복지시설입니다.
 - **주요시설** :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상담실, 식당 및 조리실, 목욕시설, 이·미용실, 각종여가시설 등
 - **수용인원** : 80명(2인1실, 30실/1인1실, 20실)
 - **입소대상**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폐장해인 및 비진폐장해인(COPD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월 입소료 |

구분	입소료	비고
2인 1실	305,000원	-
1인 1실	457,500원	2인 1실 입소료의 50% 가산

※ 매년 직전년도 입소비에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을 적용

- **문의** : 태백병원 부설 케어센터 ☎ 033 - 580 - 5200, 5262

경기요양병원부설케어센터

- 중증의 산재장해인에게 전문 간병서비스 제공을 통한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입니다.
 - **주요시설** :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상담실, 식당 및 조리실, 목욕시설 등 복지시설, 사무시설 등
 - **수용인원** : 100명(1인 1실)
 - **입소대상** : 산재 장해등급 1~3급 종결자로 별도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

| 월 입소료 |

적용 기준	입소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간병급여액과 동일 금액	상시간병급여액 : 44,760원(일)
	수시간병급여액 : 29,840원(일)
	3급 : 595,670원(월)
	보증금 : 2백만 원(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적등본상의 가족이 신원인수인으로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 제외)

※ 상가금액은 2023년 현재 기준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간병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별도 기준에 의합니다.

- **문의** : 경기요양병원 부설 케어센터 ☎ 031- 359 - 0514, 0535

4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안내

의료사업

-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의 10개 소속병원(3개 의원 포함)에서 산재상병에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전문의 진료와 첨단의료장비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센터 및 재활전문센터를 운영하여 산재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조속한 직업·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료현황

- ④ 근로복지공단의 10개 소속병원(3개 의원 포함)에서 아래와 같은 진료과 및 재활전문센터,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진료과	비고
인천병원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치과	재활전문센터 건강관리센터
안산병원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치과	재활전문센터 건강관리센터
창원병원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치과	재활전문센터 건강관리센터
대구병원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재활전문센터
순천병원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예방의학과, 치과	재활전문센터 건강관리센터
대전병원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재활전문센터 건강관리센터
태백병원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치과	재활전문센터 건강관리센터
동해병원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재활전문센터 건강관리센터
정선병원	내과, 영상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경기오양병원	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서울의원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광주의원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부산의원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이비인후과	

5 근로복지공단 「산업보건사업」 안내

산업보건사업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안전·보건의 유지,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전문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8개의 소속병원에서 산업보건사업(건강진단·보건관리대행·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인천·안산·창원·순천·대전·태백·동해·정선병원)
※ 태백병원은 '보건관리대행',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알아주세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공단의 사업)** 제1항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 **공단 정관 제2조(목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영양과 재활 및 산업보건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공단 정관 제4조(사업)** 7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및 산업보건사업 수행”

산업보건사업 수행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비 고
건강진단	질병이 발생하기 전 건강검진을 통해 보건지도 또는 질환 의심자에 대한 의학적 사후관리 등 질병 예방 및 보건관리 지원	일반검진, 특수검진, 신체검사, 종합검진 등
보건관리 대행	전담 인력(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등)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 건강진단 계획수립, 질병 유소견자 관리, 보건교육 등 사업주의 보건관리에 대한 의무사항 대행	작업환경의학전문의,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작업환경 측정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총 192종의 유해인자로부터 노출되는 정도나 발생수준을 측정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 관리	산업위생기사, 분석사

6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의료재활사업 안내

근로복지공단 병원만의 특화된 재활서비스

- 의료재활분야 선진화를 위해 인천, 대구병원에 로봇보행훈련기를 설치하여 뇌손상 및 불완전마비의 척수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로봇훈련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일 및 최대 수중재활치료 전문시설인 ‘수중재활관’을 설치해 신체 상태와 발병 단계별로 수중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활치료 제공 절차 |



※ 직업재활은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된 환자에 한하여 제공 (‘22.1.1.산재법 신설)

| 재활치료 내용 |

- 대상자 : 신체·정신기능 장애로 회복이 필요한 자
 - 주요대상 : 뇌혈관질환 발병일(수술일)부터 6개월 이내 영양환자, 척추·슬관절·견관절·고관절·완관절·수부질환·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수술일)부터 3개월 이내 영양환자
- 재활전문센터 운영 : 환자 맞춤형 1:1 집중재활치료 제공



- ▶ 물리치료
- ▶ 임상심리
- ▶ 운동치료
- ▶ 작업치료
- ▶ 특수재활
- ▶ 수중치료프로그램
- ▶ 작업능력평가 및 강화프로그램
- ▶ 운전재활
- ▶ 로봇재활

- 치료방법 : 재활의학전문의, 물리·작업 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관련 전문가에 의해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재활치료 프로그램 제공현황

구분	주요내용	운영자	운영기관
진단/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의학과전문의 중심의 진료 및 치료 재활치료목표 설정, 팀 평가회의 운영 	재활의학전문의	전체
물리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추신경계/근골격계 치료(운동치료/열전기치료) 	물리치료사	전체
작업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지/손 기능, 인지기능, 감각/지각기능, 연하기능, 일상생활동작 	작업치료사	전체
임상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인지검사, 개인/그룹 심리치료 환자의 정신상태 분석 및 평가 	임상심리사	인천, 안산, 창원, 대전, 태백, 대구
사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사회환경평가, 개인/그룹 상담 심리적 안정감 도모 및 지역사회 연계지원 	사회복지사	전체
특수재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치료, 음악치료, 목공예과장 등 운영 신체기능 강화 및 자아 존중감 향상 ※ 취미교실과 별도로 운영 	특수재활교사	인천, 안산, 창원, 순천, 대전
언어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뇌손상 언어장애 환자의 언어치료, 언어전반검사, 발음·발성검사 등 실시 	언어치료사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주간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래환자 일상생활 적응력향상 교육, 재활간호서비스 제공 	재활간호사	인천, 창원, 대전
수중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상환자의 부력을 활용, 신체기능 활성화를 유도하여 치료효과 증대 1:1치료, 그룹치료, 신체능력평가 등 	물리치료사	인천, 대구
통합재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장구 착용 시 일상생활과 연계한 적응훈련 	물리·작업치료사	인천
직업재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능력평가, 직업복귀소견서, 작업능력강화 	재활의학전문의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물리·작업치료사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동해
재활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기능 향상과 재활의욕 고취를 위한 스포츠활동(실내양궁, 그라운드 골프, 탁구 등) ※ 병원별 재활스포츠 운영 종목은 상이함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생활체육교사	전체

7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사업 안내

재활보조기구 제작 및 공급

- 산업재해로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산재환자 및 산재장해인을 위해 재활보조기구를 제작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산재환자의 경우 재활보조기구의 비용은 산재보험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재활공학연구소에서 지급하는 품목으로는 상지의지, 하지의지, 보조기, 휠체어, 구두, 목발, 지팡이 등이 있습니다.
- 재활공학연구소는 산재장해인의 편의를 위하여 7개 지역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순회이동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위치	전화번호	구분	위치	전화번호
인천서비스센터	재활공학연구소 (인천병원)	032-509-5200 (032-500-0630)	순천서비스센터	순천병원	061-720-7300
안산서비스센터	안산병원	031-500-1737	대전서비스센터	대전병원	042-670-5480
대구서비스센터	대구병원	053-715-7739	동해서비스센터	동해병원	033-530-3855
창원서비스센터	창원병원	055-280-7666	-		

직무지원형 보조기구 지원

-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산재근로자 및 환자의 취업을 위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 작업용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재환자의 성공적인 직업 복귀를 목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보조기구를 자체 개발하는 등 양질의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인천, 안산, 대전, 대구, 창원, 순천, 동해병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주치의 진료 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문의 : 032 - 509 - 5200 이메일 : bluesun082@comwel.or.kr

8 산재보험 재활인증 의료기관 안내

산재보험 재활인증 의료기관

- **재활인증의료기관이란?** 최상의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단이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및 재활의료서비스 체계를 평가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한 의료기관
 - **좋은점** : 산재근로자는 비인증 의료기관보다 공단이 정한 전문재활치료를 본인부담금 없이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인정되지 않는 집중재활환자 치료에 대해 시범재활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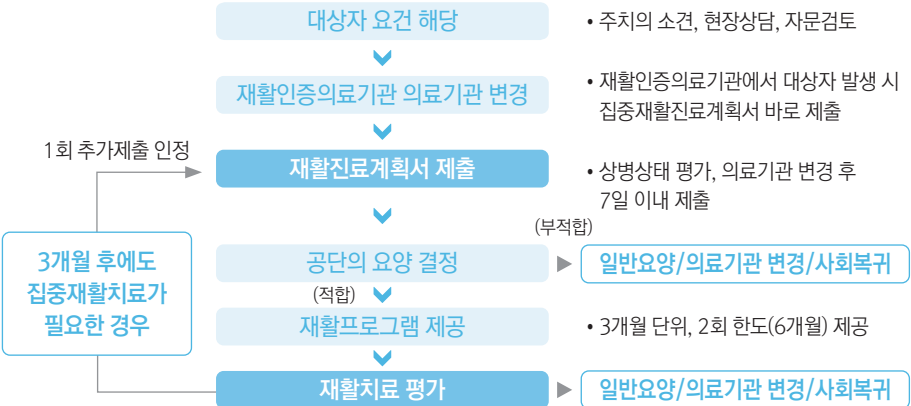
재활인증의료기관의 집중재활치료 대상

- ③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받으려면 아래의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해당 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일부터 요양기간	6개월 이내	뇌혈관(뇌손상 포함)
	3개월 이내	척추(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건관절, 주관절, 완관절·수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족부

위 어느 하나의 질환의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활치료 제공절차





산재보험 재활인증 의료기관 현황('23년 1월 현재) : 149개소

구분	의료기관명	종별	소재지	전화번호	관할지사
1	왕십리휴요양병원	요양병원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88	02-927-6501	서울지역본부
2	강남세브란스병원	상급종합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02-2019-2163	서울강남지사
3	드림요양병원	요양병원	서울 송파구 송이로 111	02-430-1122	서울동부지사
4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종합병원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02-440-6578	서울동부지사
5	금강아산병원	병원	서울 용산구 이촌로 318	02-799-5711	서울서부지사
6	서울재활병원	병원	서울 은평구 갈현로 11길 30	02-6020-3010	서울서부지사
7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	상급종합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원무팀	02-2228-7212	서울서부지사
8	명지춘해재활병원	병원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223	02-3284-7800	서울남부지사
9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종합병원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길 12	02-2639-5023	서울남부지사
10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	의원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20층	02-2670-0202	서울남부지사
11	녹색병원	종합병원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02-490-2166	서울북부지사
12	포근한요양병원	요양병원	서울 강북구 도봉로 266	02-986-9988	서울북부지사
13	심정병원	병원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85	02-1588-3330	서울관악지사
14	은천요양병원	요양병원	서울 관악구 은천로 51 5~6층	02-882-6900	서울관악지사
15	리하트병원	병원	경기 의정부시 충의로 3	031-851-0112	의정부지사
16	카이지병원	병원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6,7층	031-554-7727	남양주지사
17	강원도재활병원	병원	강원 춘천시 충열로142번길 24-16	033-248-7721	춘천지사
18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종합병원	강원 태백시 장성동 195	033-580-3114	태백지사
19	강원도 삼척의료원	종합병원	강원 삼척시 오십천로 418	033-570-7366	태백지사
20	동해요양병원	요양병원	강원 동해시 중앙로 218	033-531-2500	강릉지사
21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종합병원	강원 동해시 하평로 11	033-530-3116	강릉지사
22	강원도원주의료원	종합병원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7	033-760-4635	원주지사
23	영광병원	병원	강원 원주시 오리현길 236	033-746-4100	원주지사
24	인창대연요양병원	요양병원	부산 남구 수영로 164	051-774-1009	부산지역본부
25	은경의료재단 인창병원	요양병원	부산 동구 중앙대로 281	051-466-1004	부산지역본부
26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	병원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125번길 11-10	051-629-8025	부산지역본부

구분	의료기관명	종별	소재지	전화번호	관할지사
27	서강의료재단 서강병원	병원	부산 동구 중앙대로 514 2층 201호	051-715-8575	부산지역본부
28	학교법인 동의병원	종합병원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52-57	051-850-8522	부산중부지사
29	워크재활의학과병원	병원	부산 연제구 고분로13번길 15	051-714-4119	부산중부지사
30	근로복지공단 부산의원	의원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 16층		부산중부지사
31	메드윌병원	병원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51	051-519-8144	부산동부지사
32	해운대 나눔과학북병원	병원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2 이룸제이타워 3층	051-726-0502	부산동부지사
33	센텀이루다요양병원	요양병원	부산 해운대구 APEC로17 5층	051-608-7025	부산동부지사
34	구포부민병원	병원	부산 북구 사상로 607	051-366-7083	부산북부지사
35	맥켄지화명일신 기독병원	병원	부산 북구 금곡대로 133	070-4498-6204	부산북부지사
36	큰솔2병원	병원	부산 사상구 학장로 189	051-322-0050	부산북부지사
37	큰솔병원	병원	부산 사상구 대동로 141	051-325-9700	부산북부지사
38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종합병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055-280-0307	창원지사
39	희연요양병원	요양병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93번길 25 2층	055-270-2580	창원지사
40	세민에스요양병원	요양병원	울산 중구 내황4길11	052-293-2000	울산지사
41	울산시티e병원	병원	울산 북구 산업로 1001	052-280-8004	울산지사
42	이손요양병원	병원	울산 울주군 삼남읍 하방로39	055-780-1000	울산지사
43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상급종합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20	055-360-1205	양산지사
44	양산제일병원	병원	경남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5 4층	055-912-2027	양산지사
45	양산서울요양병원	요양병원	경남 양산시 삼성7길 11-14	055-387-9595	양산지사
46	에손요양병원	요양병원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39	055-791-7550	진주지사
47	프라임병원	병원	경남 진주시 명석면 나불로 305	055-772-6900	진주지사
48	(의)김해한솔 재활요양병원	요양병원	경남 김해시 활천로15번길 28	055-329-3340	김해지사
49	래봄병원	병원	경남 김해시 분성로 202	055-817-7711	김해지사
50	굿모닝병원	병원	대구 남구 성당로 224	053-620-9116	대구지역본부
51	남산병원	병원	대구 중구 남산로13길 9	053-252-7575	대구지역본부
52	양지요양병원	요양병원	경북 경산시 경산로 174	053-815-9100	경산지사
53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상급종합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053-258-6863	대구서부지사

구분	의료기관명	종별	소재지	전화번호	관할지사
54	더나은병원	병원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76	053-563-1000	대구서부지사
55	해성의료재단 해성병원	병원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 96	053-760-1006	대구서부지사
56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병원	대구 북구 학정로 515	053-715-7773	대구북부지사
57	뉴라이프병원	병원	대구 북구 공항로 15	053-384-9119	대구북부지사
58	대구보건대학교병원	병원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 209	053-320-1909	대구북부지사
59	위더스요양병원	요양병원	경북 경주시 승삼북길 31	054-744-0009	포항지사
60	채움병원	병원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03	054-256-2000	포항지사
61	좋은선리요양병원	요양병원	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로 27	054-245-6102	포항지사
62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종합병원	경북 경주시 동대로 87	054-770-8137	포항지사
63	갯울구미병원	병원	경북 구미시 3공단1로 280-3	054-710-6102	구미지사
64	김천제일병원	종합병원	경북 김천시 신음1길 12	054-420-9405	구미지사
65	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	종합병원	경북 구미시 1공단로 179	054-468-9571	구미지사
66	올바른요양병원	요양병원	경북 상주시 삼백로 66	054-531-0005	영주지사
67	기호의료재단 청하요양병원	요양병원	경북 영주시 신재로24번길 91	054-630-9900	영주지사
68	경북도립안동 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경북 안동시 남후면 남일로 1463	054-851-6107	안동지사
69	안동요양병원	요양병원	경북 안동시 전거리길 57	054-820-1113	안동지사
70	미추홀재활전문병원	병원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99번길 25 1층	032-430-6272	경인지역본부
71	위드미요양병원	요양병원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123번길 35 10층	032-438-5800	경인지역본부
72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상급종합	인천 중구 인항로 27	032-890-2335	경인지역본부
73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종합병원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46	032-5000-112	인천북부지사
74	국제성모병원	종합병원	인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	032-290-2862	인천북부지사
75	인천성모병원	상급종합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032-280-6363	인천북부지사
76	새울요양병원	요양병원	인천 부평구 마장로 246	032-507-3355	인천북부지사
77	서송요양병원	요양병원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972번길 9	032-551-0114	인천북부지사
78	베데스다요양병원	요양병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23 7층	031-1544-7955	수원지사

구분	의료기관명	종별	소재지	전화번호	관할지사
79	해성병원	병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42	031-222-7511	수원지사
80	휴엔유병원	병원	경기 부천시 심곡로10번길 63	032-202-0114	부천시사
81	김포에이치(H)병원	병원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8로 412 501호	031-8049-0077	부천시사
82	김포다올요양병원	요양병원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3번길 67	031-989-7587	부천시사
83	아벤스병원	병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07	031-387-2211	안양지사
84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상급종합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031-380-4043	안양지사
85	지샘병원	병원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591	031-389-3167	안양지사
86	경희요양병원	요양병원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62 1호	031-402-2222	안산지사
87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종합병원	경기 안산시 상록구 구릉로 87	031-500-1130	안산지사
88	국립교통재활병원	병원	경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260	031-580-5402	성남지사
89	분당베스트병원	병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6번길 6층	031-707-9712	성남지사
9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상급종합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031-787-1068	성남지사
91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종합병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031-780-6129	성남지사
92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종합병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0번길 20	031-779-0128	성남지사
93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종합병원	경기 안성시 남파로 95	031-8046-5172	평택지사
94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종합병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031-900-0185	고양지사
95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종합병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031-961-9335	고양지사
96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종합병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	031-810-5194	고양지사
97	파주시티요양병원	요양병원	경기 파주시 금빛로 19	031-942-7500	고양지사
98	일산복음요양병원	요양병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760 나동 6층	031-995-1605	고양지사
99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종합병원	경기 화성시 큰재봉길 7	031-8086-2047	화성지사

구분	의료기관명	종별	소재지	전화번호	관할지사
100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	병원	경기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465-4		화성지사
101	용인세브란스병원	종합병원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63	031-5189-8026	용인지사
102	세종여주병원	병원	경기 여주시 청심로 47	031-880-7795	용인지사
103	린병원	병원	경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9번길 15	031-8005-1471	용인지사
104	호남권역재활병원	병원	광주 북구 하서로 590	062-613-9061	광주지역본부
105	첨단우암병원	병원	광주 북구 엠코로 6	062-601-2000	광주지역본부
106	우암병원	병원	광주 북구 동문대로248번길 10	062-260-2802	광주지역본부
107	광주희망병원	종합병원	광주 북구 하서로 429	062-608-6006	광주지역본부
108	화순군립요양병원	요양병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30	061-379-6102	광주지역본부
109	첨단종합병원	종합병원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70번길 59	062-601-8031	광산지사
110	근로복지공단 광주의원	의원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72-8 1층	061-720-7121	광산지사
111	대자인병원	종합병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0	063-240-2007	전주지사
112	더세움병원	병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가재미 2길 7	063-243-9100	전주지사
113	예수병원	종합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063-230-8535	전주지사
114	온고을 재활의학과병원	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완산길 100	063-710-3300	전주지사
115	전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063-250-1044	전주지사
116	한솔요양병원	요양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46	063-228-1122	전주지사
117	원광대학교병원	상급종합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	063-859-2103	익산지사
118	가족사랑요양병원	요양병원	전북 김제시 하동1길 13	063-540-1500	익산지사
119	전라북도지방공사 군산의료원	종합병원	전북 군산시 의료원로 27	063-472-5470	군산지사
120	군산원광효도 요양병원	요양병원	전북 군산시 조촌4길 11	063-450-0700	군산지사
121	목포기독병원	종합병원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303	061-280-7108	목포지사
122	목포중앙병원	종합병원	전남 목포시 영산로 623	061-280-3153	목포지사
123	목포한국병원	종합병원	전남 목포시 영산로 483	061-270-5784	목포지사
124	장흥통합의료병원	병원	전남 장흥군 안양면 로하스로121	061-860-7777	목포지사
125	사랑재활요양병원	요양병원	전남 여수시 봉산남3길 9	061-808-1000	여수지사
126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종합병원	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	061-720-7122	순천지사

구분	의료기관명	종별	소재지	전화번호	관할지사
127	제주권역재활병원	병원	제주 서귀포시 동문로 1	064-730-9000	제주지사
128	제주한라병원	종합병원	제주 제주시 도령로 65	064-740-5339	제주지사
129	다빈치병원	병원	대전 서구 계룡로 553번길 60	042-332-0298	대전지역본부
130	대전성모병원	종합병원	대전 중구 대흥로 64	042-220-9455	대전지역본부
131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종합병원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	042-259-1147	대전지역본부
132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종합병원	대전 대덕구 계족로 637	042-670-5421	대전지역본부
133	충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	대전 중구 문화로 282	042-280-7053	대전지역본부
134	대전웰니스요양병원	요양병원	대전 대덕구 동서대로 1777번길 2	042-712-8531	대전지역본부
135	웰시티요양병원	요양병원	대전 중구 대종로 400	042-256-1177	대전지역본부
136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종합병원	세종 보듬7로 20	044-995-4347	유성지사
137	유성웰니스 재활전문병원	요양병원	대전 유성구 온천동로 3	042-824-6900	유성지사
138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종합병원	충남 공주시 무령로 77	041-962-1304	유성지사
139	워크런병원	병원	대전 유성구 온천로107번길 34	042-607-1202	유성지사
140	브레인요양병원	요양병원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 567번길 26	042-365-0101	유성지사
141	성화대전 재활전문병원	요양병원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 146번길 7-24	042-717-7504	유성지사
142	씨엔씨울랑병원	병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98 5층	043-211-9090	청주지사
143	아이엠병원	병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140	043-284-0675	청주지사
144	청주푸른병원	병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34	043-291-8114	청주지사
145	충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043-269-6585	청주지사
146	다우리재활병원	병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25	041-575-7105	천안지사
147	새로나병원	병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향교1길 130-23	041-520-7010	천안지사
148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종합병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041-570-7151	천안지사
149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종합병원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041-630-6281	보령지사

9 산재보험 화상인증 의료기관 안내

산재보험 재활인증 의료기관

- 화상인증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피부보호제, 드레싱류 등 공단에서 정한 범위 내 치료 재료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없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수부운동평가 및 재활 운동프로그램 이용 가능

| 화상인증의료기관 치료 대상자 요건 |

- ⑦ 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으로 요양 중인 화상환자(상병코드: T20~T32)

산재보험 화상인증의료기관 현황('23년 1월 현재) : 12개소

구분	의료기관명	소재지	종별	관할지사
1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길 12	종합병원	서울남부지사
2	(재)베스티안 서울병원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82	병원	서울성동지사
3	하나병원	부산 사하구 다대로 311	병원	부산지역본부
4	(재)베스티안 부산병원	부산 북구 화명대로 1	병원	부산북부지사
5	광개토병원	대구 중구 중앙대로 366	병원	대구지역본부
6	광주굿모닝병원	광주 북구 북문대로 182	병원	광주지역본부
7	(재)베스티안 베스티안병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	종합병원	청주지사
8	예수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종합병원	전주지사
9	제일병원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85	종합병원	진주지사
10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강원 동해시 하평로 11	병원	강릉지사
11	대전화병원	대전 동구 동대전로 39	병원	대전지역본부
12	화사랑병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 83번안길 3	병원	창원지사

10

산재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안내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로 접속하시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각종 보상업무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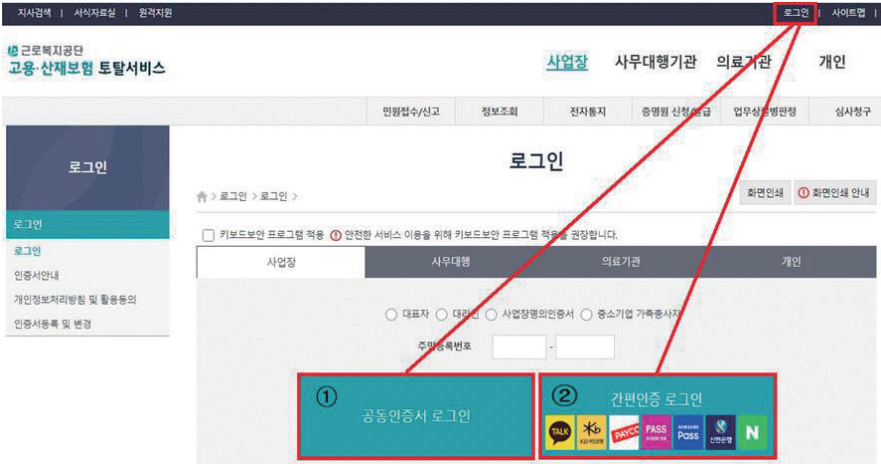
이용 가능한 정보

이용 메뉴	메뉴 설명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업무상 사고 발생 시 공단으로 신고하기 위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작성방법 등 안내
휴업급여 청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청구안내
간병급여 청구	요양 종결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드리는 간병급여 청구안내
산재근로자 정보 조회	요양기간 및 요양 승인 의료기관, 승인상병, 후유증상 정보, 급여지급정보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평균임금 증감 내역	평균임금 증감 내역(적용시작일, 적용종료일, 적용평균임금, 변동률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산재환자진료내역	요양한 의료기관에 지급된 진료비 지급내역 조회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	보험급여 지급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 신청
심사청구	보험급여 불승인/부지급 처분 등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상질병 판정 '나의 사건검색'	요양결정 이후 정보공개 청구 없이 본인 업무상질병판정서 인터넷 조회 및 출력

이용 방법

- 토탈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없이 인증서 로그인만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전자서명법 개정 이전 발급받은 유효기간 만료되지 않은 공인인증서로 토탈서비스 이용 가능
 - 전자서명법 개정 이전 발급받은 유효기간 만료된 공인인증서로 토탈서비스 이용 불가능
 -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발급받은 공동인증서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용인증서로 토탈서비스 이용 가능
- 좀더 쉽고 편리하게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인' 접속 대상으로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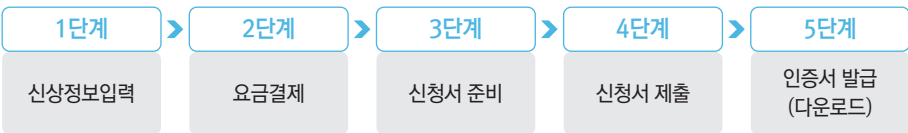
로그인 방법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토달서비스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 우측상단 “로그인” 클릭하여 사용자 유형 선택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으로 접속
 - ☞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 근로복지공단 전용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가능하며 우측 하단의 “근로복지공단 전용인증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순서대로 진행 (인증서 발급 시 별도 비용 발생)

근로복지공단 전용인증서 발급 절차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토달서비스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 우측상단 “로그인” 클릭하여 사용자 유형 선택 후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접속
 - ☞ ‘개인’ 대상만 간편인증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사업장로그인은 이용불가)
 - 사유 : 간편인증서비스는 개인 기반 서비스입니다.
 - ※ **개인접속자 범위** : 대표자 개인, 대리인 개인, 사무대행 대표자/소속직원 개인, 의료기관 대표자 개인, 대리인 개인, 개인 일반근로자, 특근자, 산재근로자, 대리인

「민원 진행과정 검색 서비스」란 ?

- ☑ 산재근로자 및 의료기관에게 보험급여 신청 사건의 처리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신청인 등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 업무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소속기관 직원들의 업무량 경감을 위해 토탈 서비스 내 「민원처리 진행상황 안내」 서비스 제공합니다.
- **민원접수현황 조회**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인증서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메뉴 내 “민원접수현황 조회” 검색기능을 제공합니다.

 - **산재근로자(인증서가 있는 경우)**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인증서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메뉴 내 “민원접수현황 조회” 화면을 이용하여 최초요양·장해·유족급여청구서 진행사항 조회는 물론 더 많은 민원접수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산재근로자(인증서가 없는 경우)**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간편인증 로그인을 통하여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메뉴 내 “민원접수현황 조회” 화면을 이용하여 최초요양·장해·유족급여청구서 진행사항 조회는 물론 더 많은 민원접수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후 해당 사업장의 산재신청현황(최초요양·장해·유족급여청구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정보조회 ➡ 민원조회)
 - 의료기관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후 토탈서비스로 접수된 민원서류에 한하여 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합니다.(마이페이지 ➡ 민원접수현황 조회)
- **심사청구 나의사건검색 조회** : 공단이 행한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불복이 있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진행 처리 상태를 확인 가능합니다.
- **업무상질병판정 나의사건검색 조회** :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진행 처리상태를 확인 가능합니다.

 - 지사에서 업무상 질병 재해조사 진행중이면 판정위원회 접수 전이므로 조회가 불가하나 업무상 질병판정서는 최초요양급여신청서 결재완료 후 확인 가능합니다.

11

외부기관의 재해근로자 지원 사업 안내

[한국의료지원재단] 저소득·전자산업 재해근로자 치료비 등 지원

- 한국의료지원재단에서는 저소득 전자산업 전·현직 근로자의 사고와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 ① 저소득 전자산업 전·현직 근로자로 사고와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
- ② 현재 통원 또는 입원 치료 중인 근로자

| 지원내용 |

- ① 치료비(간병비 포함) 지원
- ②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지원
- ③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생활비 지원(생활비 단독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 ① 입원 중인 근로자는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담당직원이 신청
- ② 통원 치료 중인 근로자는 개인이 신청
- ③ 재단 홈페이지(<http://komaf12.org>) 공지사항 참조

| 문의사항 |

- ① 지원기준 및 관련문의는 한국의료지원재단 : 02-6212-9753

[(주)우아한 형제들 등] 배달 라이더 긴급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 배달업 종사자 누구나에게 배달 중 갑작스럽게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에 대한 긴급 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의 해소와 일상의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 ④ 전국음식업 배달 라이더(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재해자)

| 지원기준 |

- ④ 중위소득 140% 이하(홈페이지 참조)

| 지원내용 |

- ④ 1인당 최대 1,500만원 이내 중증도 관계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 ④ 의료비 지원 규모 확대(500만원 증액)
- ④ 라이더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회복지원 키트

| 신청방법 |

- ④ 카카오톡 채널
- ④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

| 문의사항 |

- ④ 전화 : 02-365-3673
- ④ 홈페이지 참조(woowarider.or.kr)

[우미희망재단-굿네이버스] 산재 가정 자녀 및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가정 자녀들과 베트남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꿈매니저와 1:1 매칭함으로써, 꿈을 지원하고 자신의 미래 방향성을 찾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꿈지원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 ③ 산업재해피해가정 및 베트남다문화가정 아동(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3학년)

| 사업지역 |

- ③ 광주광역시, 광양시, 순천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포항시, 천안시, 아산시

| 사업내용 |

- ③ 1:1 진로탐색 멘토링(8~10회기)
- ③ 꿈지원 장학금 50만원
- ③ 베트남 해외캠프(24년 1월 초 예정)
- ③ 꿈꾸는 캠프(국내 캠프)

| 신청방법 |

- ③ 굿네이버스 담당자에 연락 및 메일 발송(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 메일 전달 예정)

| 문의사항 |

- ③ 모집기간 및 사업기간 등 세부사항은 문의를 통해 확인
 - ③ 굿네이버스 사업운영팀(02-6424-1616/jypark1@gni.kr)
- ※ 지원 대상과 사업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기에 확인 필요함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 유족 심리상담 및 치료비 등 지원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보건복지부의 협력 지원을 받아 유족이 고인을 건강하게 애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애도 상담 및 정신건강상담 |

- ③ 고인을 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스트레스, 가족관계, 정신건강 어려움 등 1:1 전문가 상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 |

- ③ 대상 : 사별기간 1년 이내, 고인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
- ③ 금액 : 1인당 100만원(최대 100만원 추가지원 가능)
- ③ 항목 : 외래, 입원비, 약제비, 심리검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 동료지원활동가 양성 |

- ③ 대상 : 사별 기간 2년 이상
- ③ 내용 : 자조모임 리더, 온라인상 지원활동, 희망의 글쓰기
- ③ 활동방법 : 양성 교육 과정(기초/심화) 수료 후 위촉

| 돌봄서비스 |

- ③ 대상 : 사별 기간 1년 이내
- ③ 내용 : 일상 및 정서 지원서비스

| 심리부검면담 |

- ③ 대상 : 사별 기간 3개월~3년 이내 가족 또는 연인, 친구,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지인
- ③ 내용 : 면담, 유서 등 기록 검토를 통해 고인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다양한 요인을 살펴 보는 방법

| 전국 자살 유족 자조모임 안내 |

- ③ 내용 : 같은 아픔을 지닌 유족들이 함께 애도 과정을 공유하고, 공감과 이해, 지지와 격려 등을 함께하는 모임

| 신청방법 |

- ③ 거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 가능

| 문의사항 |

- ③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02-3706-0516 / partnerkfsp@kfsp.org)

산재보험
보상·재활 서비스
가이드



Chapter



청렴한 세상,
함께 만들어 갑니다

- | | |
|------------------------|-----|
| 1. 산재보상 부정수급 신고 안내 | 108 |
| 2.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안내 | 109 |
| 3.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 110 |

1 산재보상 부정수급 신고 안내



산재보험 부정수급이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등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수급 사례

1.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 조작하여 산재보상 받는 행위
2. 고의·자해사고 또는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행위
3. 보험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 평균임금을 높게 조작하는 행위
4. 요양 중에 취업 또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부당하게 휴업급여를 받는 행위
5. 장애상태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높은 등급으로 조작하는 행위
6. 실제 간병을 받지 않음에도 간병급여를 받는 행위
7.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증명으로 인한 청구 행위
8. 산재불법브로커 등 부당한 제3자 개입을 통한 보험급여 편취 행위
9. 의료법을 위반하여 불법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받는 행위

| 부정수급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

- 전화 신고 : ☎ 052 - 704 - 7474(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 인터넷 신고 : <https://www.comwel.or.kr> → 고객센터마당 → 신고센터 → 산재부정수급신고
- 우편(방문) 신고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8층 구상관리부

| 부정수급 적발시 어떻게 되나요? |

- 부당이득금 징수(허위 부정의 경우 지급받은 급여액의 2배, 부정수급 공모자 포함)
-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 부정수급자 등 명단 공개(과거 3년간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또는 1회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 신고인 보호 및 포상은 어떻게 되나요? |

- 신고인 신상정보 보호 : 익명신고 가능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통해 신고인의 신상정보는 철저히 보장
- 신고 포상금 제도 : 부정수급 확인시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소멸시효 제외)에 따라 1인당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안내

- 근로복지공단은 깨끗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부정부패와 각종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 ① 금품 · 향응 · 편의제공 수수, 의약품 등 각종 리베이트 수수, 산재 불법 브로커
- ② 청탁 · 알선 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③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침해행위

| 신고자 보호 | 제보 ·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

| 신고자 포상금 |

- 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부패행위로 확인되는 경우 1인당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 ②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고 2억원까지 포상하고 있습니다.

| 신고방법 |

근로복지공단

- 우편 : 근로복지공단 감사실(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 우편번호: 44428)
- 팩스 : 0505 - 296 - 4120
-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공익침해 행위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포털 -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신고하기
- 부패 · 공익신고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노력도 (부패방지시책평가) '10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한 국민들의 권익제고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① 근로복지공단 익명신고센터



QR코드를 스캔하세요

3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일체의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금품 등을 받지 않으며, 공단은 고객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을 담당으로 배정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이 통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에게 불법 인·허가 등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됩니다.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사회, 신뢰의 근로복지공단을 만듭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나 그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적이해관계자 회피 의무신고를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합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직원은 담당 고객이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다른 직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회피신청을 합니다.

깨끗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고객이 근로복지공단에 지켜야 할 약속들

-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직무상 지위 권한을 이용한 특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민원 등 특정행위의 요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기합니다.
-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업무 관련 공단 직원의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알아두세요!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신고

-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 청렴포털 - 부패공익신고센터(www.clean.go.kr)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관련신고

부록

산재보험
보상·재활 서비스
가이드



전국 지사 찾기

- | | |
|--------------------|-----|
| 1. 근로복지공단 위치 안내 | 112 |
| 2. 근로복지공단 병원 위치 안내 | 117 |
| 3. 안전보건공단 위치 안내 | 118 |

1 근로복지공단 지사 위치 안내

- 산재보상·재활서비스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 1588 - 0075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 052 - 704 - 7474

기관명	소재지	관할구역	우편번호
공단본부	울산시 중구 종가로 340	-	44428
산재심사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5층 (영등포동2가)	-	07254
서울지역본부	서울 중구 퇴계로 173, 9층, 19층, 22층 (충무로3가)	서울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04554
서울강남지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8, 8~10층(대치동)	서울 강남구	06193
서울동부지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14~15층 (신천동, 월드타워빌딩)	서울 송파구, 광진구, 강동구	05510
서울서부지사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 8~12층(신수동)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04108
서울남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3층 (영등포동2가)	서울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07254
서울북부지사	서울 종량구 망우로 307, 6층 (상봉1동, 리베로빌딩)	서울 도봉구, 강북구, 종량구, 노원구, 성북구	02098
서울관악지사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3 (신대방동, 삼성보라매옴니타워) 6·7층	서울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7071
서울서초지사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 16층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서울 서초구	06720
의정부지사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519번길 2-57 (금오동)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 철원군	11754
남양주지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16번길 43, 7층(다산동, 다산타임프라자)	경기 남양주시, 구리시	12284
서울성동지사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48, 4층 (성수2가, 거영빌딩)	서울 성동구	04782
서울남부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1층 (영등포동2가)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관악, 서울서초지사 및 암 등 기타질환(전국지사)	07254

기관명	소재지	관할구역	우편번호
서울북부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서울 중구 을지로 158 삼풍넥서스빌딩 7층 (을지로4가)	서울지역본부, 서울서부, 서울북부, 의정부, 남양주, 서울성동지사, 강원도 소재 지사	04548
서울특수형태 근로종사자센터	서울 종로구 율곡로2길 25, 11층 (연립뉴스빌딩)	서울·강원 권역 소재 지사 및 의정부·남양주 지사 특고업무	03143
부산지역본부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 4~9층(초량동)	부산 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48731
부산동부지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63길 26, 1~3층 (부곡동)	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46274
부산북부지사	부산 북구 기찰로 12, 6~7층(덕천동, 이수빌딩)	부산 북구, 사상구, 강서구	46548
창원지사 (본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4, 2~3층(신월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창구,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진해구, 의령군, 창원군, 함안군	51439
창원지사 (별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6, 1층(신월동)	(본관) 경영복지·재활보상1·2부· 가입지원1·2부 (별관) 일자리지원팀	
울산지사	울산 남구 문수로 330, 3~5층(옥동)	울산광역시	44661
양산지사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3층 (석산리)	경남 양산시, 밀양시	50635
김해지사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66, 2, 3층	경남 김해시	50935
진주지사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88, 8층(칠암동)	경남 진주시, 사천시, 합천군, 거창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남해군	52725
통영지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49-10, 6,7층	경남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53015
부산중부지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12~13층 (부전동)	부산 부산진구, 연제구	47244
부산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부산 동구 중앙대로 314, 7층(초량동)	부산, 울산광역시 소재 지사, 양산지사	48729
경남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64 신텍타워 10층(상남동)	경상남도 소재 지사(양산지사 제외)	51504
부산특수형태 근로종사자센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 10층(초량동)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특고업무	48731
대구지역본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95, 3층, 7~9층 (삼덕동2가)	대구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41948
대구북부지사	대구 북구 원대로 130, 3~4층 (침산동, 파크드림갤러리)	대구 서구, 북구, 경북 군위군,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41590

기관명	소재지	관할구역	우편번호
대구서부지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80, 8~9층 (두류동, 감삼빌딩)	대구 달서구, 경북 고령군, 성주군	42645
포항지사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23, 1~3층 (대접동)	경북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37685
구미지사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2(송정동)	경북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39281
경산지사	경북 경산시 경안로 233, 6, 7층 (중방동, 도륜빌딩)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38621
영주지사	경북 영주시 원당로 68(휴천동)	경북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36102
안동지사	경북 안동시 경동로 841, 2층(용상동)	경북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36711
대구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대구 남구 중앙대로 200, 12층(대명동)	대구, 경북 소재 지사	42425
경인지역본부	인천 남동구 미래로 16, 9층 (구월동, 미추홀타워)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21556
인천북부지사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4층(구산동)	인천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21417
수원지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3, 4층 (정자동)	경기 수원시	16313
화성지사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85, 8,9층	경기 화성시	18302
용인지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 1층 (마북동)	경기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16921
평택지사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375, 7, 8, 9층 (서정동)	경기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17774
부천시지사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4, 7~10층(상동)	경기 부천시, 김포시	14623
안양지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 2층, 7~9층 (안양동)	경기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14006
안산지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47(본오동), 1~3층(본오동)	경기 안산시, 시흥시	15532
고양지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4층 (마두동)	경기 고양시	10410
파주시지사	경기 파주시 경의로 1246, 4층(와동동)	경기 파주시	10896
성남지사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8번길 14, 4~6층(도촌동)	경기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13426
경인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3층(구산동)	인천·경기 소재 지사 (의정부지사 제외)	21417

기관명	소재지	관할구역	우편번호
경인특수형태 근로종사자센터	인천 부평구 길주로 635 (삼상동, 엘림타워) 501호	인천·경기 특고 업무(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남양주시, 구리시 제외)	21344
광주지역본부 (본관)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8, 9, 10층(양동)	광주(광산구 제외),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61925
광주지역본부 (별관)	광주 북구 금재로 30, 4, 5층(유동)	(본관) 경영지원, 재활보상1·2부, 가입지원1·2부, 진폐보상부, 복지사업부, 산재의학센터 (별관) 부정수급예방부, 송무부	61240
전주지사 (본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5층 (인후동1가)	전북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55014
전주지사 (별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3길 21-12, 5층 (인후동1가)	(본관) 경영복지부, 재활보상1·2부 (별관) 가입지원1·2부	55013
익산지사	전북 익산시 하나로 478, 1층(어양동)	전북 익산시, 김제시	54552
군산지사	전북 군산시 해망로 178, 1~3층(장미동)	전북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54026
목포지사	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 5층(호남동)	전남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장흥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58730
여수지사	전남 여수시 문수로 125(문수동)	전남 여수시, 광양시	59700
제주지사	제주 제주시 연신로 14, 1층(이도2동)	제주	63225
광산지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46, 1층, 10층 (우산동)	광주시 광산구, 전남 나주시,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62363
순천시사	전남 순천시 백강로 367, 5층(조례동)	전남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57934
광주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광주 남구 봉선로 1, 3층(봉선동)	광주·전남·전북·제주 소재 지사	61687
대전지역본부 (본관)	대전 서구 한밭대로 809, 8층, 11층, 15~17층(둔산동, 사학연금회관)	대전(유성구, 동구 제외)	35209
대전동부지사	대전 동구 옥천로 183, 3층 (판암동, 판암퍼스트타워)	대전 동구, 충남 금산군, 충북 옥천군, 영동군	34675
청주지사 (본관)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136번길 21 (내덕동)	충북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28481
청주지사 (별관)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128, 4층 (내덕동)	(본관) 경영지원·가입지원부 (별관) 재활보상부	

기관명	소재지	관할구역	우편번호
천안지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6, 7, 8층 (불당동)	충남 천안시, 아산시	31169
충주지사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434 (봉방동)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27428
보령지사	충남 보령시 한내로 27, 1~3층(동대동)	충남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33433
서산지사	충남 서산시 남부순환로 1035, 오성빌딩 2~3층	충남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31998
대전서부지사	대전 유성구 반석로 9, 7,8,9층(반석동)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세종특별자치시	34068
대전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대전 서구 한밭대로 809, 9층(둔산동)	대전·충남·충북 소재 지사	35209
대전특수형태 근로종사자센터	대전 서구 문예로 137, 7층(둔산동, KT&G)	대전·충북·충남·세종·광주·전북· 전남·제주 특고업무	35209
강원지역본부 (본관)	강원 원주시 만대로 59-1(무실동)	강원 원주시, 횡성군	26387
강원지역본부 (별관)	강원 원주시 시청로 30, 3층 (무실동, 메트로프라자)	(본관) 경영지원부, 재활보상부, 가입지원부, 복지사업부 (별관) 진폐보상부	
춘천지사	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 7층 (석사동, 넥서스 프라자빌딩)	강원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경기 가평군	24415
강릉지사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17, 3층, 4층 (포남동)	강원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25492
태백지사	강원 태백시 황지로 181, 3층(황지동)	강원 태백시, 삼척시	26008
영월지사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33번길 30, KT빌딩 3층	강원도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26233

2 근로복지공단 병원 위치 안내

기관명	소재지	진료 전문 센터(기능)	우편번호
인천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6 (구산동)	재활전문센터, 수중운동재활관, 척추전문센터, 관절센터, 뇌졸중전문센터, 건강관리센터, 치질클리닉	21417
서울의원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20층 (당산동3가, 코레일유통사옥)	전문재활치료, 재활특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07258
안산병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일동)	재활전문센터, 척추전문센터, 드림건강증진센터	15324
창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중앙동)	재활전문센터, 건강관리센터	51524
부산의원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16층 (범천동, W웨딩시티)	전문재활치료, 재활특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47366
대구병원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515(학정동)	재활전문센터, 수중재활치료실	41405
순천병원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1길 24(조례동)	재활전문센터, 척추전문센터	57947
광주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72-8, 1층 (우산동, 오펜지파크)	전문재활치료, 재활특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62364
대전병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37 (법동)	재활전문센터, 관절전문센터	34384
태백병원	강원도 태백시 보드미길 8 (장성동)	재활전문센터, 호흡기 중심 재활치료 (부설 케어센터)	26052
동해병원	강원도 동해시 하평로 11 (평릉동)	재활전문센터, 건강관리센터	25738
정선병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1길 145	산재 및 진폐환자 요양전문시설	26129
경기요양병원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465-4	산재 및 척손환자 요양전문시설 (부설 케어센터)	18558
재활공학 연구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10번길 26 (구산동)	첨단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 및 산재장해인의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	21417

3 안전보건공단 위치 안내

- 업무관련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 1644 - 4544

기관명	소재지	대표번호
본부	울산 중구 중가로 400 안전보건공단	1644-4544
서울광역본부	서울 중구 칠패로 42 우리빌딩 7~9층	02-6711-2800
부산광역본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051-520-0510
광주광역본부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빌딩 8~9층/11층	062-949-8700
인천광역본부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032-510-5000
대구광역본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0, 21층	053-609-0500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	042-620-5600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정동로 83, 2층/4층	052-226-0510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0, 13층	031-259-7149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033-815-1004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 KT빌딩 3층	043-230-7111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041-570-3400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고용노동부전주지청 4층	063-240-8500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빌딩 7층	061-288-8700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 1로 312-23	054-478-8000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	055-269-0510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4층	064-797-7500
서울남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8층	02-6924-8700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35, 4층	02-2086-8000

기관명	소재지	대표번호
대구서부지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빌딩 5층	053-650-6810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031-841-4900
고양파주지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제2전시장 오피스동 7층, 8층	031-540-3800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 대신프라자 3층	032-680-6500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 제이엘컨벤션웨딩홀 2층	031-481-7599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쇄골로 17번길 3 소곡회관 2층	031-785-3300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 정관빌딩 3층	033-820-2580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로 482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청사동 2층	063-460-3600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061-689-4900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054-271-2017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양산노동합동청사 4층	055-371-7500
충북북부지사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해오름 학사 1층	043-849-1000

2023

산재보험 보상에서 치료·재활까지
알기 쉬운

보상·재활 서비스 가이드

발행일	2023년 5월
발행처	근로복지공단(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편집처	산재보상국 보상계획부
고객센터	1588-0075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
가이드북	QR



일하는 삶의 희망을 지키는
튼튼한 희망버팀목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객상담 및 안내

대표전화

 1588-0075

 www.comwel.or.kr